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제1조(「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로, “문화재인”을 “문화유산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3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 의”를 “매장유산의”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를 “매장유산 유존지

역에”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매장문화재의”를 “매장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매장유산 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의”를 “매장유산의”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의”를 “매장유산의”로,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를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 발굴의”를 “매장유산 발굴의”로,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를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장문화재 발굴”을 “매장유산 발굴”로, “매장문화재 관리”를 “매장유산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매장문화재 발굴”을 “매장유산 발굴”로, “매장문화재 세척”을 “매장유산 세척”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 등)”을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매장문화재의 공고)”를 “(매장유산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15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 18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19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2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2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2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24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25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26과 같이 한다.

제4조(「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을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을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를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로”를 “국가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을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국가무형유산등”)”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등”을 “국가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을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을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를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등”을 “국가무형유산등”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등”을 “국가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대장)”을 “(무형유산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을 “국가긴급보호무

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가무형문화재등”을 “국가무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대장”을 “무형유산대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를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로 한다.

제16조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28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9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30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 31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 32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을 별지 33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34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35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36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37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 38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 39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40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4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4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4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44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45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 4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4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48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4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5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51과 같이 한다.

제5조(「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정문화재가”를 “지정문화유산이”로, “지정문화재 경관”을 “지정문화유산 경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을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로,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을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문화유산교육”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로,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을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정해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 등이”를 “문화유산 등이”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

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를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1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

정서를”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를 “문화유산 국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를 “문화유산 국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를 각각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문화재 국외”를 “문화유산 국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등록문

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을 각각 “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으로, “국가지정문화재에”를 “국가지정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는”을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를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조사원”을 “문화유산조사원”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를”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를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등록문화재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위원회”를 각각 “문화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의 소유자”를 “문화유산의 소유자”로, “문화재의 소재지”를 “문화유산의 소재지”로,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시·도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6조 중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국가등록문화재 대장”을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으로, “국가등록문화재에”를 “국가등록문화유산에”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국가등록문화재 기술”을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의 부분 중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가”를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에”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를 “문화유산 국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를 “문화유산 국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반출”을 “문화유산 반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를 “문화유산 국외”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를 “문화유산 국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외”를 “문화유산 국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 국내”를 “문화유산 국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감정위원(이하 “문화재감정위원”)을 “문화유산감정위원(이하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감정위원”을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한다.

제47조 중 “문화재감정위원”을 “문화유산감정위원”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비문화재의 확인)”을 “(비문화유산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반동산문화재로”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로, “비문화재로”를 “비문화유산으로”로, “비문화재 국외반출”을 “비문화유산 국외반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일반동산문화재가”를 “일반동산문화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중 “비문화재”를 각각 “비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감정대장”을 “문화유산감정대장”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을 “(일반동산문

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반동산문화재를”을 “일반동산문화유산을”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를 “(시·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로 한다.

제5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매매업 허가를”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로,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을”을 “문화유산매매업을”로,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으로,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으로,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으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를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로,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를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를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로,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으로,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으로 한다.

제52조의3의 제목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매매업의”를 “문화유산매매업의”로,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를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을 각각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의”를 “문화유산매매업의”로, “문화재매매업 허가대

장”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으로,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관리학”을 “문화유산관리학”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을 “(문화유산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 매매·교환”을 “문화유산 매매·교환”으로, ““문화재매매장부””를 ““문화유산매매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장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매매장부”를 “문화유산매매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매매업자”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문화재매매장부에”를 “문화유산매매장부에”로, “문화재매매장부를”을 “문화유산매매장부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매매업의”를 “문화유산매매업의”로,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를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매매장부”를 “문화유산매매장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을 “(지역문화

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각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문화재돌봄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유산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9항 중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각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62조 중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비문화재”를 “비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52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 53과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 54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55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56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 57과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 58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60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61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 62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 63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을 별지 64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5서식을 별지 65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6서식을 별지 66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7서식을 별지 67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68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69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70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71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7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7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74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75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7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7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 78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7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80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8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8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83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84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 8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86과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 87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88과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 89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90과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91과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92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93과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 94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 95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 96과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 97과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 98과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 99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 100과 같이 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을 별지 101과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 102와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을 별지 103과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을 별지 104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의2서식을 별지 105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을 별지 106과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 107과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 108과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 109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 110과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을 별지 111과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 112와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을 별지 113과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의2서식을 별지114와 같이 한다.

별지 제79호의2서식을 별지 115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을 별지 116과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을 별지 117과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 118과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을 별지 119와 같이 한다.

별지 제84호서식을 별지 120과 같이 한다.

별지 제85호서식을 별지 121과 같이 한다.

별지 제85호의2서식을 별지 122와 같이 한다.

별지 제85호의3서식을 별지 123과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별지 124와 같이 한다.

별지 제87호서식을 별지 125와 같이 한다.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 126과 같이 한다.

별지 제88호의2서식을 별지 127과 같이 한다.

별지 제88호의3서식을 별지 128과 같이 한다.

별지 제89호서식을 별지 129와 같이 한다.

별지 제90호서식을 별지 130과 같이 한다.

제6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

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명부”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조의3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으로 한다.

제5조의4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으로 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를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을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으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을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으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을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으로,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을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각각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등의”를 “국가유산수리업등의”로,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를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을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 능력”을 “국가유산수리 능력”으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을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목 1) 본문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고, 같은 1) 중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각각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로 하며, 같은 1) 단서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고, 같은 목 2) 및 3)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을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문화재수리 능력”을 “국가유산수리 능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 능력은”을 “국가유산수리 능력은”으로, “문화재수리 능력과”를 “국가유산수리 능력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 중 “문화재수리 능력”을 “국가유산수리 능력”으로, “문화재수리 실적은”을 “국가유산수리 실적은”으로, “문화재수리 실적에”를 “국가유산수리 실적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문화재

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실적도”를 “국가유산수리 실적도”로,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0조의4의 제목 “(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능력”을 “국가유산수리 능력”으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0조의5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다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등을”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을”로,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등을”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문화재수리등이”를 “국가유산수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로,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의 양도”를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로, “문화재수리업에”를 “국가유산수리업에”로,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을 “국가유산수리업의 영위기간”으로, “문화재수리 공사금액”을 “국가유산수리 공사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법인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을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과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업 전부”를 “국가유산수리업 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등의”를 “국가유산수리업등의”로,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를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도급”을 “국가유산수리 도급”으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다목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

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문화재수리한”을 각각 “국가유산수리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자로”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을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을 “(국가유산

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 종류별”을 “국가유산 종류별”로 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문화재수리 착수·완료의 보고)”를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문화재수리 착수”를 “국가유산수리 착수”로 한다.

제17조의5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승인)”을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계획”을 “국가유산수리 계획”으로,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을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7조의7제5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7조의9의 제목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을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으로 한다.

제17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1)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을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

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을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감리원으로”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로, “문화재수리업자등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을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으로, “문화재수리 평가표”를 “국가유산수리 평가표”로,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를 “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가”로, “문화재수리 전체”를 “국가유산수리 전체”로,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분담하는 국가유산수리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을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의 평가를”을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로,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을 “국가유산수리의 평가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을 “국가유산수리업자를”로, “문화재수리업자 지정”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을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각각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지정”으로 한다.

제29조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31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 132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 133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134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135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136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 13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38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13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40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141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 142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43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144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45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146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147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 148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 149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6서식을 별지 150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을 별지 151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8서식을 별지 152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9서식을 별지 153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10서식을 별지 154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155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156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15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158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15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16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16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16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16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164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 165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별지 16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16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168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16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170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17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17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173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174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 17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별지 176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4서식을 별지 177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 178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별지 17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7서식을 별지 180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18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18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183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184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185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186과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187과 같이 한다.

제7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188과 같이 한다.

제8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의 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3호의2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 특별보존지구

[] 보존육성지구 에서의 행위허가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허가합니다.

허가번호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허가대상		위치(지번)
허가 내용	구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수목 식재 또는 벌채 []토석류 채취·적치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기타()
	상세내용	
	허가기간	
허가조건		

210mm×297mm[백상지(80g/㎡)]

- 행 정 사 항 -

1. 이 허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를 받고 허가 행위를 착수·변경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30일 이내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수·변경 또는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나.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2]

[별지 제1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일련 번호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인 연월일	확인 (발주자)
1							
2							
3							
4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유의사항

-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 계약 구분은 '수의계약규모' 또는 '수의계약규모초과'로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3]

[별지 제2호서식]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용	
	사유	
사업 개요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 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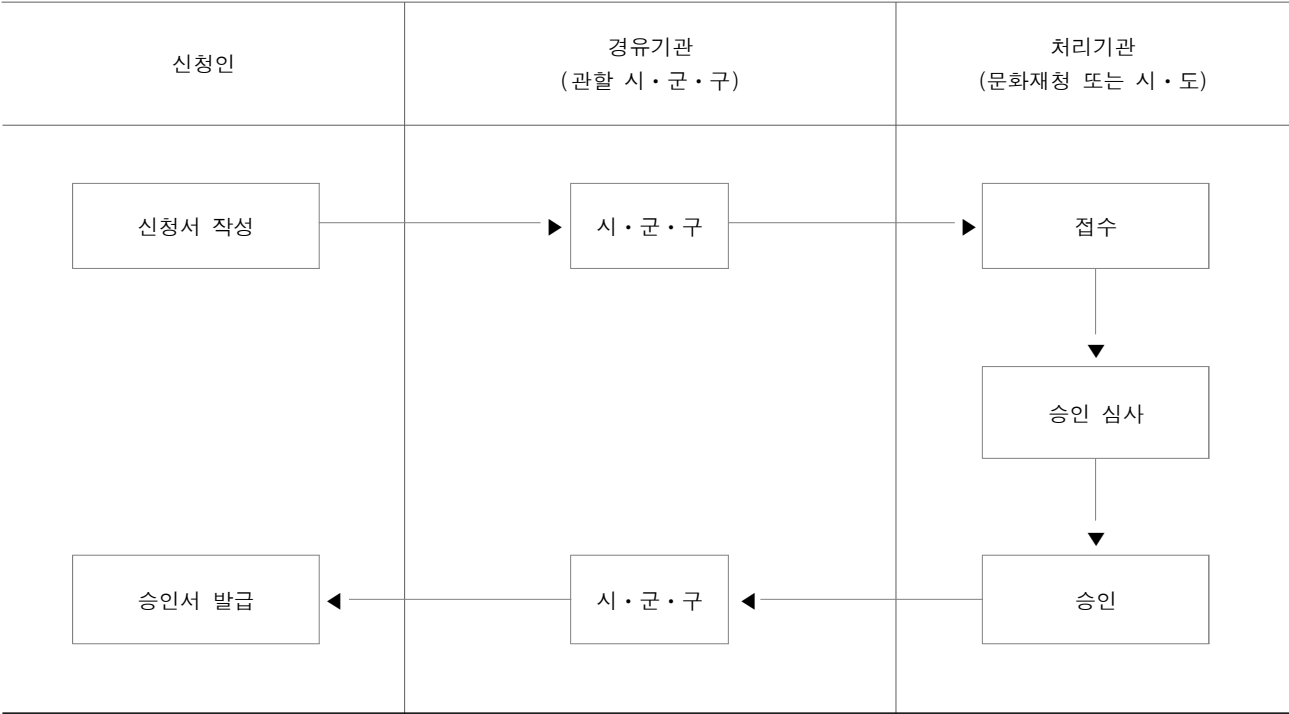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보존처리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별지 4]

[별지 제3호서식]

보존처리계획 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승인내용	
	승인조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행 정 사 항

1. 이 승인서에 따른 승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5]

[별지 제4호서식]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업 개요	착수일	완료 예정일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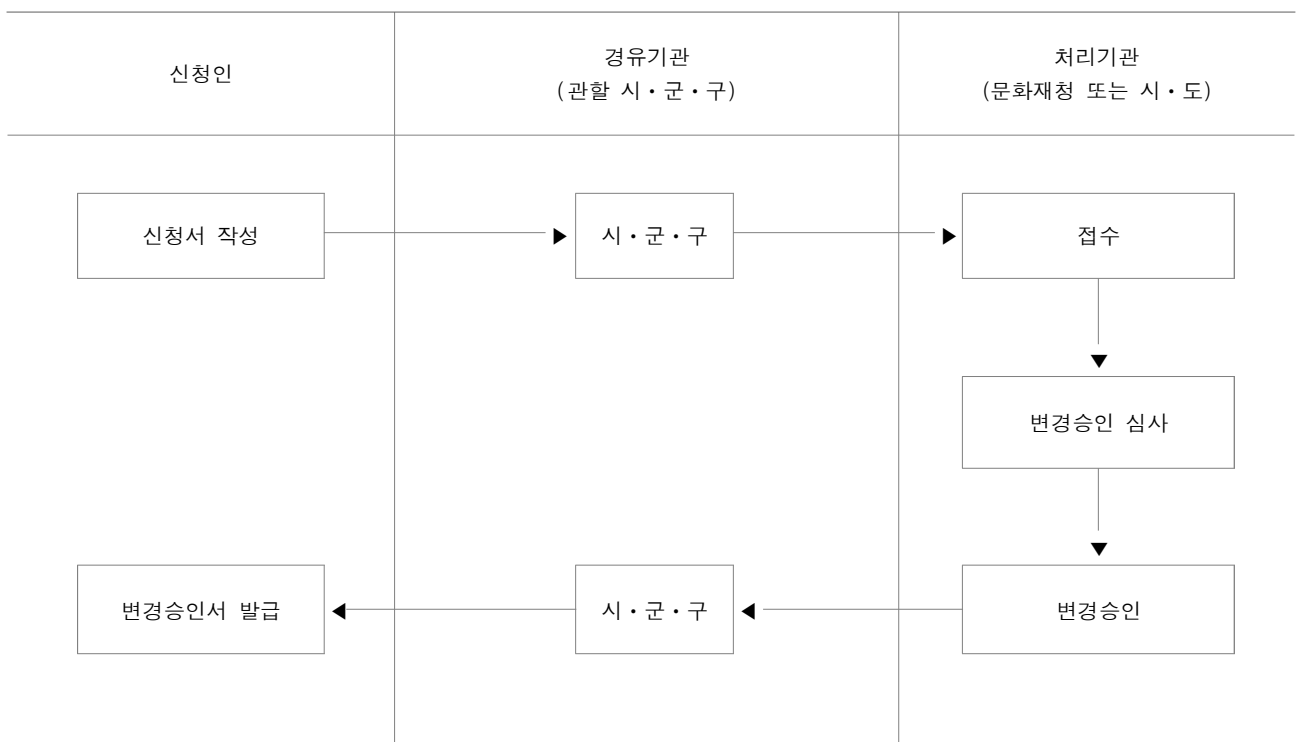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6]

[별지 제5호서식]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

(앞쪽)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당초 승인내용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변경승인내용	
승인조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행 정 사 항

1. 이 승인서에 따른 승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7]

[별지 제6호서식]

보존처리 ([]착수 []완료)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보존처리명	
	보존처리내용	
사업 개요	착수일	완료 예정일
	보존처리계획 승인 번호	보존처리계획 승인 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 개요	상호(대표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8]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조사단장	○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무형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

	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보조원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과학연구원	○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2. 육상지표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3. 수중지표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국가유산 분야>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수중 분야> ○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 분야의 경력에 한함)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4. 수중발굴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국가유산 분야>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수중 분야> ○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

	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분야의 경력에 한함)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보조원	○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과학 연구원	○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비고

1. “**국가유산**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고고(考古)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전통건축학과, 문화인류학과, **국가유산학과**, **국가유산관리학과**, **국가유산보존학과**, 미술사학과, 민속학과, 박물관학과, 역사학과, 전통조경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국가유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유산** 전공“이란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매장유산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해양 국가유산** 조사·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보존학과**, **국가유산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국가유산** 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6.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참관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이나 **매장유산** 정리 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7. 문화재청장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학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한 외국대학의 **국가유산** 관련학과, 해양 관련학과 또는 보존 관련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관련 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학술지를 말한다.
9.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해양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을 말한다.

[별지 9]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구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육상발굴조사 기관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2명 ○ 준조사원 2명 ○ 보조원 2명 ○ 보존과학연구원 1명	○ 향온·향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육상지표조사 기관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1명 ○ 준조사원 1명	○ 향온·향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지표조사 기관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2명(국가유산 분야 1명, 수중 분야 1 명) ○ 준조사원 1명	○ 향온·향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측 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 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 (2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발굴조사	○ 조사단장 1명	○ 향온·향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기관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3명(국가유산 1명, 수중 분야 2명) ○ 준조사원 2명 ○ 보조원 2명 ○ 보존과학연구원 2명	○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

※ 비고

가.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나. 인력 기준의 조사 요원은 상시근무자이어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나.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력 기준,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별지 10]

[별지 제1호서식]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 내용	[] 지정문화유산 []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 매장유산 [] 그 밖의 내용	
정보 공개 청구지역		
공개 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그 밖의 형태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그 밖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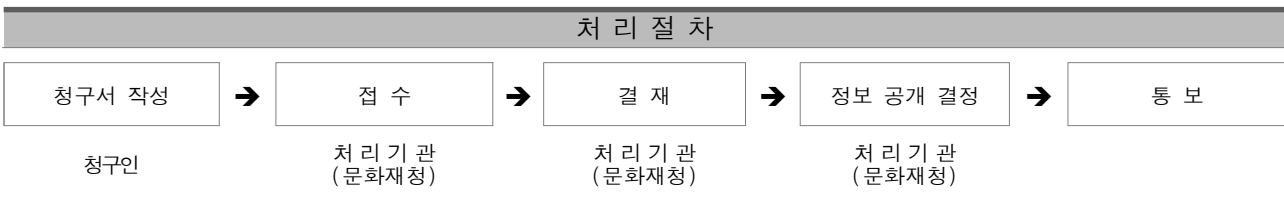
위와 같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11]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산 보존조치 $\left(\begin{array}{l} [\quad] \text{ 현상보존} \\ [\quad] \text{ 현지보존} \\ [\quad] \text{ 이전보존} \end{array} \right)$ **결과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내용	
보 존 조치 유형	[] 현상보존 [] 현지보존 [] 이전보존			
	상세 내용			
보 존 조치 이행 결과	이행기간 ~			
	이행자(기관)			
	소요비용		보존(복원) 면적	
	이행 장소(주소)			
	이행 방법			

위와 같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조치([] 현상보존, [] 현지보존, [] 이전보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도서(현상보존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측량성과도 3. 보존조치 현장 사진 4. 향후 관리계획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12]

[별지 제3호서식]

국가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내용	
참관조사 지역 (주소)				
참관조사관	소속		참관조사일 년 월 일	
	성명			
참관조사관 의견	[] 건설공사 시행 [] 정밀발굴조사 [] 시굴조사 [] 표본조사 [] 그 밖의 의견			

위와 같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참관조사 지역 위치도 2. 참관조사 지역 전경 사진 3. 참관조사 광경 사진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4]

[별지 제5호서식]

매장유산

[] 발굴
[]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① 신청인	명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 유산	매장유산명	
	발굴조사 유형 []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매장유산의 종류	발굴(현상변경)면적 m ²
	매장유산의 현재 상태	
	매장유산 소재지 (발굴 장소)	
③ 신청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m ²
⑤ 발굴 조사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⑥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합니다)		
⑦ 발굴비용 원	⑧ 발굴비용 부담자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⑩ 지표 조사협의	협의일	협의 내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발굴허가, []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명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사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① 신청인

- 실제 발굴허가 신청인을 적습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허가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되,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인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② 대상 매장유산

- 매장유산명: 매장유산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0000매장유산
(예) 00시 000학교 건립 예정부지 내 매장유산
- 발굴(현상변경)면적: 실제 발굴(현상변경)면적을 적습니다.
- 소재지: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사유: 해당 건설공사명/시행기관을 적습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000000청

④ 건설공사 면적: 해당 건설공사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발굴 또는 현상변경 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발굴조사기관: 발굴 또는 현상변경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대표자: 조사기관의 총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총장을,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은 연구원장을,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은 기관장을 말합니다).
- 주소, 전화번호: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 조사단장: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책임조사원: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매장유산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⑥ 발굴조사기간: 현장조사일수를 적고,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⑦ 발굴비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발굴비를 적습니다.

- 발굴비용은 매장유산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건설공사의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확정됩니다.
- 조사 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적습니다.
(예) 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인 000 등

⑨ 발굴비용 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⑩ 지표조사 협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사업 협의의 내용을 적습니다.

[별지 15]

[별지 제5호의2서식]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 신청인	명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 유산	매장유산명				
	매장유산의 종류				
	매장유산 소재지(발굴 장소)				
③ 신청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m ²
⑤ 발굴 조사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⑥ 허가사항	허가번호				
	제 - 호				
	발굴기간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합니다)		
⑦ 변경사유	발굴면적				
	m ²		발굴조사 유형		
	[] 시굴 [] 정밀발굴				
⑧ 변경사항	변경 발굴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합니다)		
	변경 발굴면적		변경 발굴조사 유형		
m ² [] 표본 [] 시굴 [] 정밀발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계획서(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를 말하며,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조사기관 의견서 3. 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작성 방법

① 신청인

- 실제 발굴허가 신청인을 적습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허가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되,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인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② 대상 매장유산

- 매장유산명: 매장유산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0000매장유산
(예) 00시 000학교 건립 예정부지 내 매장유산
- 소재지: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사유: 해당 건설공사명/시행기관을 적습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000000청

④ 건설공사 면적: 해당 건설공사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발굴(현상변경)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발굴조사기관: 발굴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⑥ 허가사항: 기존에 발굴조사 허가받은 사항을 적습니다.

⑦ 변경사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발굴허가 받은 사항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예) 유물·유구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발굴기간 연장 필요

(예) 유물·유구가 추가로 확인되어 발굴면적 변경 필요

(예) 시굴조사에서 유물·유구가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로 전환 필요

⑧ 변경사항: 실제 발굴 변경허가 받으려는 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16]

[별지 제6호서식]

[] 발굴조사 계획서
[] 현상변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조사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조사단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조사 목적			조사 유형 [] 시굴 [] 정밀발굴

조사 경위
조사방법

조사비용 (총액)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원 (비중 %)	원 (비중 %)
	각종 경비	학술료
	원 (비중 %)	원 (비중 %)
원	그 밖의 비용	
	원 (비중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 발굴조사 [] 현상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역의 위치도 및 근경·원경 사진 2.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역의 상세 조사계획[트렌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3. 비용산출 상세 명세서(조사 인력 투입 내용, 직접경비의 세부 항목별 산출내용을 포함합니다)
------	--

[별지 17]

[별지 제7호서식]

매장유산

[] 발굴

[] 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소재지		면적(m ²)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토지(임야) 면적	발굴 면적	주소	성명	비고
계	필지	m ²	m ²			

년 월 일

작성자 : 발굴허가 또는 현상변경허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 공무원) : 시·도 시·군·구 과(팀)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18]

[별지 제7호의2서식]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신고인	명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 내용	허가번호 제 - 호	
	매장유산명	
	발굴(현상변경)면적 m ²	조사지역 주소
	착수일	완료예정일
발굴 조사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굴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19]

[별지 제8호서식]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①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② 매장유산 종류	③ 명칭	④ 수량
⑤ 재료	⑥ 구조·형태	⑦ 크기

⑧ 현재 상태

⑨ 발견 일시

⑩ 발견 장소

⑪ 유래 또는 전설

⑫ 발견 경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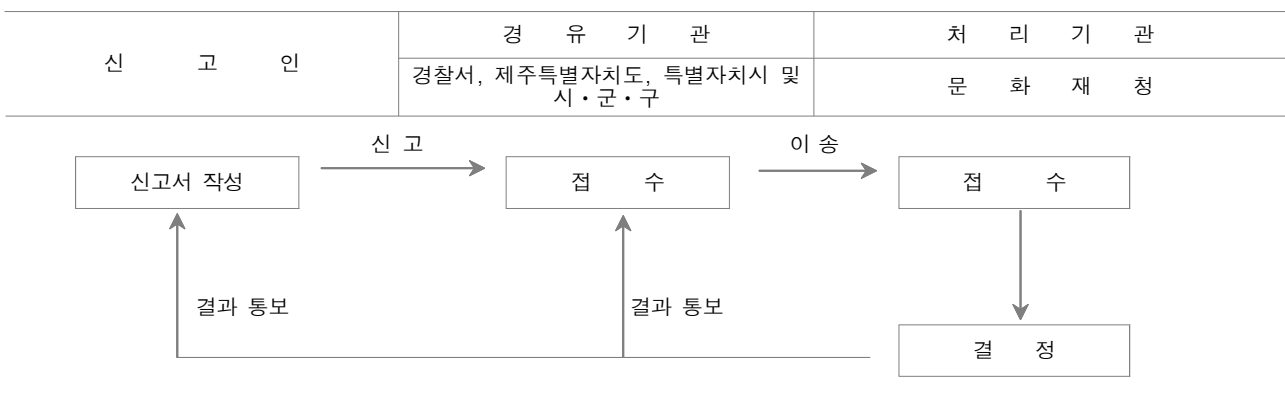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 방법

- ① 신고인
 -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 발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 ② 매장유산 종류: 도기·자기, 지·의류, 철기, 석기, 목기, 고분, 화석 등의 분류에서 선택합니다.
- ③ 명칭: 발견된 국가유산의 모양과 재질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명칭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 적습니다.
- ④ 수량: 발견된 국가유산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자기-3점 / 철기-2점 등)
- ⑤ 재료: 발견된 국가유산의 소재가 무엇인지에 따라 흙, 돌, 철, 나무, 종이, 천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⑥ 구조·형태: 발견된 국가유산의 모양이 파편인지 온전한 형태인지를 구분하고, 모양새와 구조에 대해 적습니다.
- ⑦ 크기: 가로, 세로, 높이를 기본으로 하되, 부정형(不定形)인 경우 대략적인 크기를 적습니다.
- ⑧ 현재 상태: 표면의 훼손 상태, 발견된 장소 주변의 상태, 발견 시의 상태 등을 적습니다.
- ⑨ 발견 일시: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적습니다.
- ⑩ 발견 장소: 발견한 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주소 및 위치)를 적습니다.
- ⑪ 유래 또는 전설: 발견한 곳에 대한 기존의 구전(口傳) 내용 등을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⑫ 발견 경위: 국가유산을 발견하게 된 배경, 방법, 사유 등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기관명)		
	주 소	연락처	
판정 신청 국가유산	국가유산명(수량)		
	소 재 지(발견 장소)		
	공고기관	공고 번호	
	공고기간 · · · ~ · · ·		

$\frac{1}{2}$ $\frac{1}{2}$ $\frac{1}{2}$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별지 21]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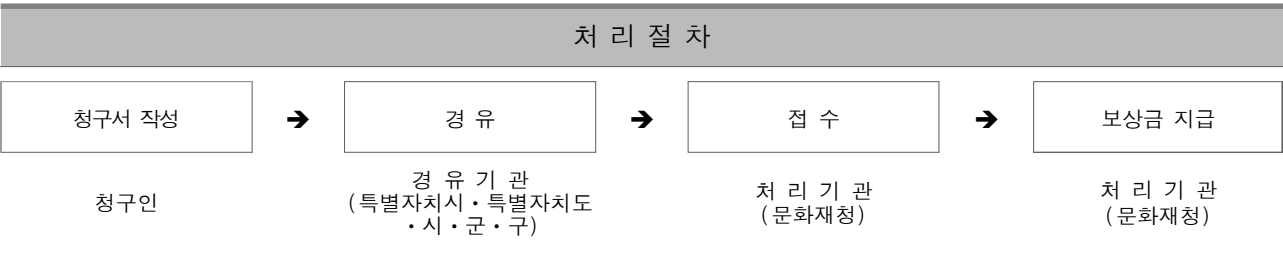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내용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명칭	수량
	발견 장소 (소유자 :)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청구인과의 관계 :)	
	청구 금액 원	
	보상금 수령 은행 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	

위와 같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지 22]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지급 청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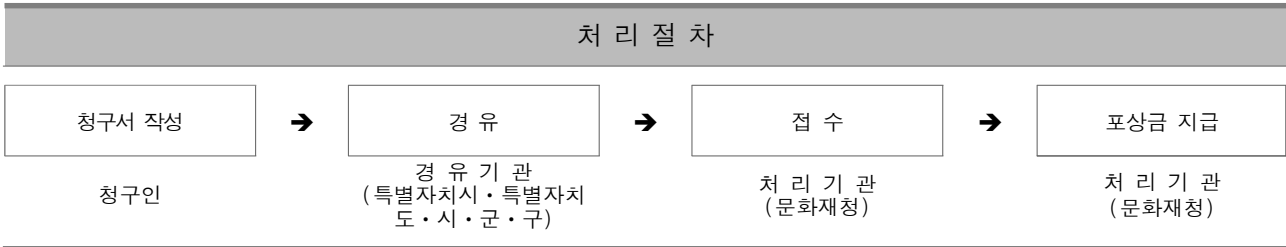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내용	발견신고건명		
	발굴조사기관		
	발굴된 국가유산		
	공적(功績) 내용		
	포상금 수령 은행 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		

위와 같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23]

[별지 제12호서식]

매장유산의 발견·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

1.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나. 공고 방법

2. 공고 내용

가. 유적명

나. 유물명 및 수량

다. 조사 지역

라. 조사기간

마. 조사기관

바. 보관처

3. 공고 결과

가. 소유권 주장자

나. 소유권 주장 사유

위와 같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의 공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illegible]

– 89 –

[별지 25]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우편번호)	연락처 (팩스번호)

신청내용	기관 유형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기관 종류 (복수 선택 가능)	☐ 육상지표조사기관 ☐ 육상발굴조사기관 ☐ 수중지표조사기관 ☐ 수중발굴조사기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제출서류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조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사 요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5.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26]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조사기관 등록증

기 관 명 :

기 관 종 류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27]

[별지 제1호서식]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무형유산 명칭	
개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시·도의 의견)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1. 학술조사 개요

-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
- 조사단 구성 및 역할

2. 해당 무형유산의 주요내용

1) 종목의 개요

- 연혁 및 유래
- 전승 현황

2) 종목의 실연과정

- 실연 절차 및 내용
- 핵심 기능·예능

3.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 _ A4용지 15매 내외로 작성

1) 전승가치

(1) 역사성

- 전승된 기간
- 지속성
- 역사적 근거

(2) 학술성

- 한국문화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학술연구 자료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3) 예술성·기술성

- 어떠한 형식미·내용미·표현미를 가지는가
- 어떠한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를 가지는가

(4) 대표성

-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고유성(독특성)을 가지는가
-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2) 전승환경

(1) 사회문화적 가치

- 무형유산의 형태가 현재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2) 지속가능성

- 해당 무형유산이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
- 전승기반의 안정성 및 대내외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

4. 종합의견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종합의견

[별지 28]

[별지 제1호의2서식]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청인	구 분	[] 보유자 [] 전승교육사	
	종 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지 29]

[별지 제2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국가무형유산 명칭			
추천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능·예능 (이수 기능 · 예능:)		
경 력	국가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		
	기능·예능 공개실적		
	○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그 밖의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 (또는 전시) 실적 등을 적습니다.		
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그 밖의 사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제 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cm×4.5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국가무형유산 ○○○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채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
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
립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 직인

[별지 31]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보유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인정일자:

귀 단체는 국가무형유산 ○○○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 직인

제 호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cm×4.5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국가무형유산 ○○○○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
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 직인

제 호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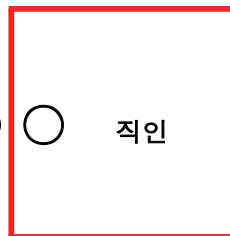
3.5cm×4.5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귀하는 국가무형유산 ○○○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전수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 직인



[별지 34]

[별지 제4호서식]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국 가 무 형 유 산 명 칭				
구 분	[] 보유자	성 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 보유단체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	주 소 (전화번호:)		
재 교 부 사 유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 난 · 분 실 · 훼손 등 의 사 유 (육 하 원 칙 에 따 라 구 체 적 으 로 기 재)				
그 밖 의 사 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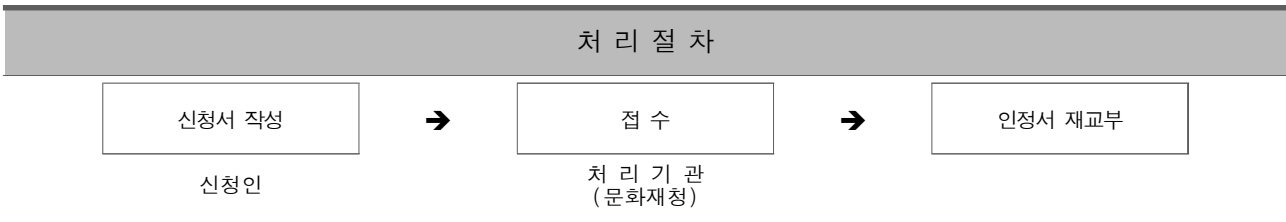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물	신분증 사본 1부, 사진(3.5cm×4.5cm) 1장 ※ 신분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하십시오.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35]

[별지 제5호서식]

☐ 보유자(보유단체)
국가무형유산 ☐ 명예보유자 인정서 교부대장
☐ 전승교육사

교부 번호	국가무형유산 명칭(제 호)	성 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일 경우)	보유 기능·예능	주 소	교 부 구 분	교 부 연월일	교부자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36]

[별지 제6호서식]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증부

발급 번호	국가무형유산 명칭(제 호)	전승자 구분	성 명 (보유단체명)	인 정 일 자	발 급 일 자	발급자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37]

[별지 제7호서식]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국 가 무 형 유 산 명 칭							
구 분	[] 보 유 자 [] 보유단체	성 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주 소	(전화번호:)				
신청용도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증서 수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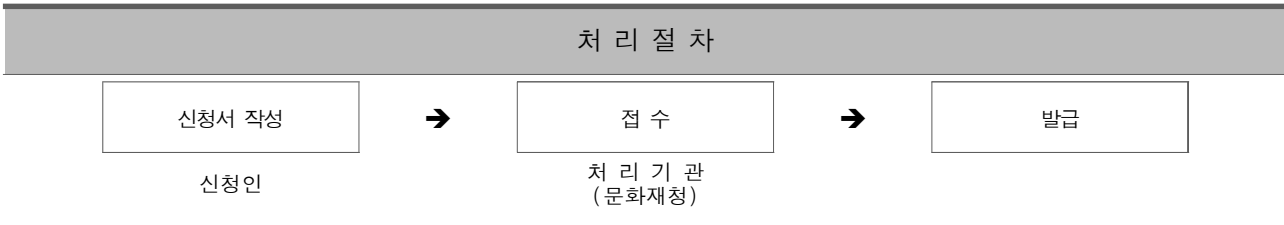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물	1.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2. 보유자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하십시오.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증서 수여증명서

1. 국가무형유산 명칭:
2. 전승자 구분:
3. 성명(보유단체명):
4.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5. 수 여 일 자:
6. 증 서 번 호:

우리 선조들이 간직해 온 국가무형유산 ○○○의 보전 및 진흥에 공헌하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를 기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또는 보유단체) 증서를 수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 직인

[별지 39]

[별지 제7호의3서식]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국가무형유산 명 칭(제 호)	전승자 구분	성명 (보유단체명)	증서 번호	수여 일자	신청인		발급 일자	발급자
						관계	성명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40]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								
지정 기준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각 목 중 선택)							구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개인	단체
무형유산 명칭	관리번호			한글				
	한자			영문				
지정일				해제일				
개요 및 지정사유								
관리연혁								

전 승 자 목 록

전 승 자 목 록

[illegible]

[별지 41]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국가무형유산(보유자·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국가무형유산 명칭 제 호 (명칭)		지정 연월일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명)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주 소		연 락 처	
보유자		전승교육사	
명		명	
이수자		전수생	
명		명	
조사 결과	기능·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전수교육 경비		
	전승활동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부 점검 내용

기능·예능 현황	
전수교육 현황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 경비	
전승활동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별지 42]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국립무형유산원
--

60mm×90mm [백상지(150g/㎡)]

(뒤쪽)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수신처: 국립무형유산원).
--

[별지 43]

[별지 제11호서식]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 성명

[] 주소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본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국가무형유산 명칭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	신			
	구			
그 밖의 사항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 성명,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지 44]

[별지 제12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국가무형유산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명)
전수교육 세부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별지 45]

[별지 제13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국가무형유산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명)
전수교육 세부 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수교육 증명 자료(사진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 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46]

[별지 제13호의2서식]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추천서

추천 대상자	사진 (3.5*4.5)	국가무형유산 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수이력	전수교육 주체		
	이수증 발급일		
실적	전수교육 참여		
	전승활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유산 ○○○의 우수 이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1매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	--

작성방법
“실적”란에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47]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국가무형유산 ○○○ (이수 기능·예능:)

성명:

생년월일:

전수교육 주체:

발급일:

위 사람은 위의 국가무형유산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 장 직인

[별지 48]

[별지 제15호서식]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국 가 무 형 유 산 명 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 발 급 신 청 사 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 난 · 분 실 · 훼손 등 의 사 유			
그 밖 의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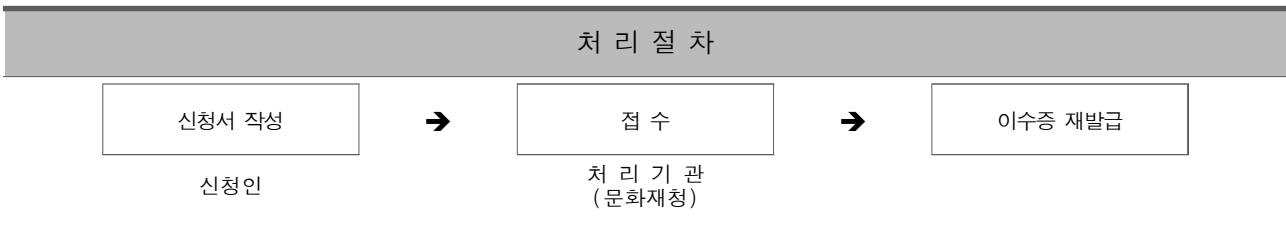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귀하



[별지 49]
[별지 제16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이수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국가무형유산 제 호(명칭)	전수교육 주체	이수 기능·예능	이수자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발 급 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별지 50]
[별지 제17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국가무형유산 명칭			
전수교육 주체		심사대상자	
심사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 의견			비고
심사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51]

[별지 제18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추천받는 사람	국 가 무 형 유 산 명 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국 가 무 형 유 산 전 수 경 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유단체명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및 첨부요령

-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52]

[별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2조의2제1항제1호 관련)

항 목		내 용
문화유산 정보	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문화유산의 점유면적,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植生), 현상 등
주변 현황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유산과의 관계 등
	입지환경	지형의 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水系) 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정비계획	문제점,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토지이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장애요소	문화유산 보존관리 장애요소
관련 법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문제점	법규 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기타 사항	현상변경 사항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주민의견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 내용 등
	기타	행위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별지 53]

[별표 1의3]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7조의2제2항 관련)

영역	항목	인증기준
1. 교육내용 및 교육과목	가. 프로그램 목표	1)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 제2조 제2항에 따른 <u>문화유산교육</u> 의 정의에 부합할 것 2) <u>문화유산</u>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
	나. 프로그램 내용	1) 프로그램 대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 <u>문화유산을</u> 활용한 내용일 것 2) 학습자(교육 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한 내용일 것 3) 프로그램의 개요, 일정, 기대효과,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을 것
	다.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지식교육, 체험교육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 2) 구체적인 학습지원 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라. 프로그램 운영·관리	1)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의 홍보, 참여 유도 등 참여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자체 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2. 교육시설 등	가. 교육장소	강의실, 야외시설, 답사지 등 프로그램의 내용에 적합한 교육장소를 확보할 것
	나. 교재 및 교구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는 것
	다. 안전관리	1)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교육장소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비고

1.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영역별로 분류된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프로그램을 인증한다.
2. 인증기준의 영역별 각 항목의 세부 필요사항 및 증빙서류 등 인증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문화재청장은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54]

[별표 1의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7조의2제4항 관련)

1. 인증표시



인증번호 제 호
문화재청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표시방법

- 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중앙에는 정부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정부 상징표시의 윗부분에는 인증명칭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적고, 아랫부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증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의 영문(Heritage Education Program Accredited by CHA)을 적는다.
- 나. 인증표시 아래에는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인증번호와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와 인증이 만료되는 날짜를 제1호의 인증표시 예시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 다.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별표 3]

	No.	비문화유산 확인(국외 반출 가능)				
	APPROVED FOR EXPORT					
	문화재청(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공항·항만		문화유산		감정위원	
			문화유산		감정위원	
	문 화 재 청 장				직인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별지 56]

[별표 4]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제55조제3항 관련)



3cm

[별지 57]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1호	허가 취소		
나. 법 제90조·제92조 및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2호	허가 취소		
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3호	허가 취소		
라.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 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80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5호	허가 취소		
바.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문화유산매매장부 에 문화유산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2) 문화유산매매장부 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법 제80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등급	포상금 지급등급기준
1등급	1.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나.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다. 문화재청장이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유산을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2등급	2.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3등급	3.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한 자 다. 매장유산을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마. 허가 없이 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려는 정황을 알고 문화유산을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
4등급	4.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유산을 취득·운반 또는 보관한 자 다. 매장유산을 발견하고 법정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5등급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함으로써 몰수된 문화유산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미수범을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 **문화유산**의 평가액은 사건별로 몰수한 **문화유산**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59]

[별지 제1호서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앞쪽)

대상 문화유산	종 류	명 칭
사업 개요	사업명	
	위 치	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문화유산 입지 현황 분석 (뒤쪽 참조)	해당 문화유산 의 특성	
	해당 문화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그 밖의 문화유산 특이사항	
	검토항목	해당 여부
1.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땅파기)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국가지정문화유산 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국가지정문화유산 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8. 삭제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9.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영향 여부: [] 있음, [] 없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문화유산입지 현황분석란 작성방법

(이 내용은 건축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내 용	작성 방식
해당 문화유산의 특성	문화유산의 재질(석조, 목조, 매장유산 등), 문화유산 이전 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해당 문화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면(面)문화유산에 포함된 점(點)문화유산 여부,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그 밖의 문화유산 특이사항	그 밖에 사업신청지와 문화유산의 관계(정면, 배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주변의 기존 현상변경 등의 허가 여부

[별지 60]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학교 또는 소속 기관			
	전공 또는 연구사항			
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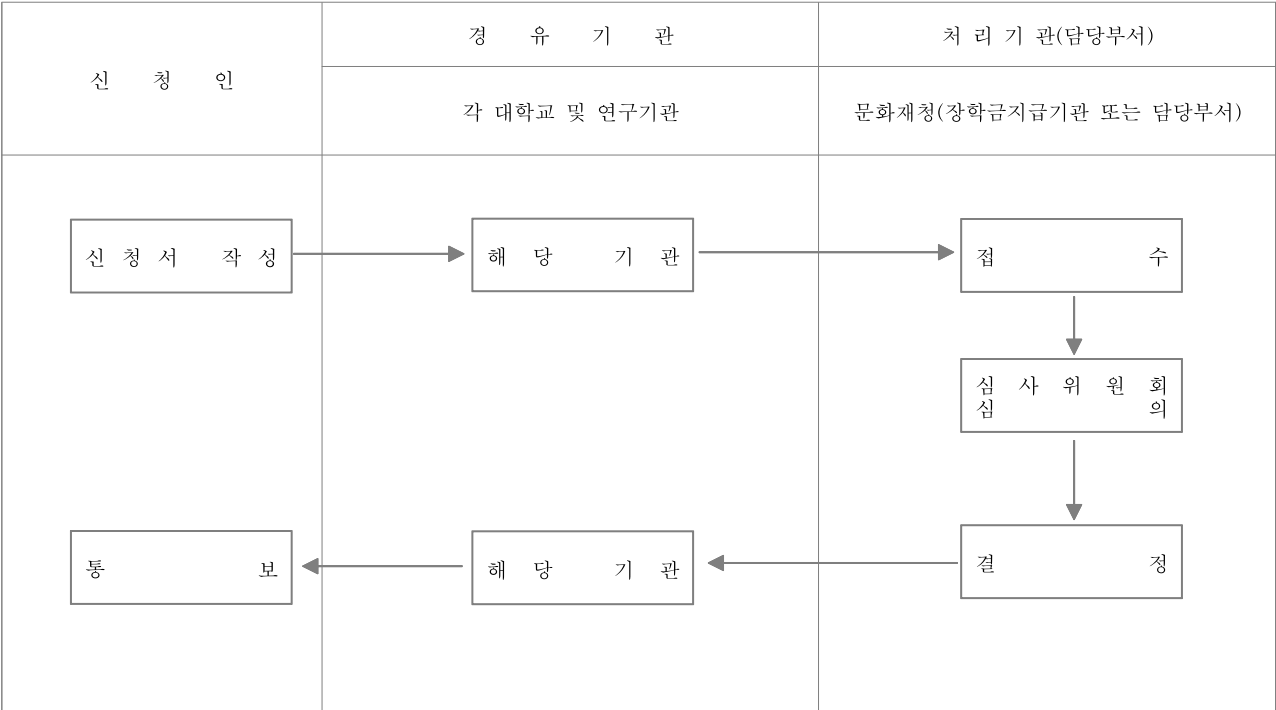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수수료
	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 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	없음
	4.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연구실적 개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신청인의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영예를 명심하고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의 연구 또는 학업에 전력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소속 학교 또는 소속

기관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생년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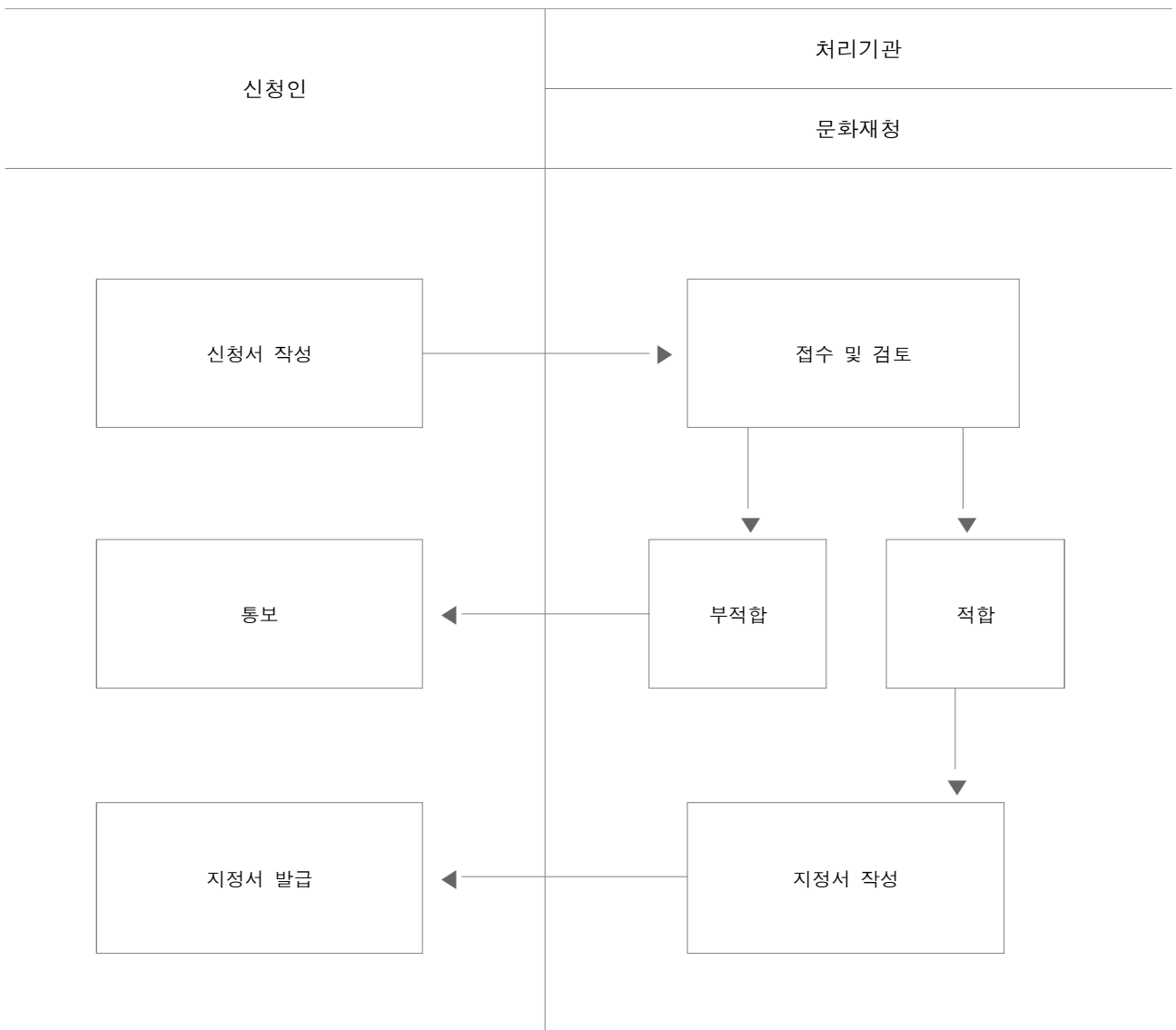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서

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명칭:
2.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대표자:
3.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소재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별지 64]

[별지 제3호의4서식]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개인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명칭			
	프로그램 목표			
	참여대상			
	주요내용			
	프로그램 구성 (시간/비율)	계	지식교육	체험교육
	시행기간			
	시행장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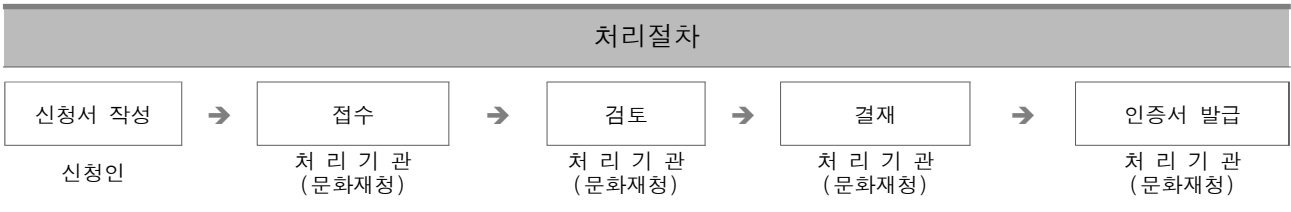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 및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65]

[별지 제3호의5서식]

제 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

1.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명칭:
2. 개발·운영 기관 명칭:
3. 개발·운영 기관의 대표자:
4. 대표자의 주소:
5. 유효기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별지 66]

[별지 제3호의6서식]

제 호

기 증 서 약 서

문화유산명	수 량	크 기	비 고
합계: 건 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문화유산을 문화재청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법인 ·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문화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의7서식]

기 증 품 관 리 대 장

(기증품 번호)	문화유산명 (관리번호)		수 량		국 적/시 대 (제작연도)		재 질 (재료 및 기법)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비 고)								
(기증품 번호)	문화유산명 (관리번호)		수 량		국 적/시 대 (제작연도)		재 질 (재료 및 기법)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비 고)								
소 계 건 점 / 누계 건 점									

[별지 68]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대상문화유산		
조사자	성명		전공 분야	
	소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문화유산 명칭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연혁·유래 및 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1. 문화유산 종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시·도지정문화유산 등)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2. 문화유산 명칭: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시·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하여 검토합니다.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문화유산의 인문적·지리적 입지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여 적습니다.
 4. 연혁·유래 및 특징: 문화유산의 주요 연혁·유래·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하여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지정 가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와 문화유산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 여부, 다른 유사 문화유산과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하여 적습니다..
 - 근거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항목을 밝혀 적습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문화유산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7.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8.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유산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 공통사항
-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 적습니다.

[별지 69]

[별지 제5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문화유산 구분	지정종류		
	유형/종목		
대상 문화유산 현황	명칭	한글	한자
		영문	
	시대 / 연대		
	소재지		
	구조/형식/형태		
	재료 / 품질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유산	
	※ 상세내용은 3쪽~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	보호구역	
		보호물	
현재용도/기능			
소유자(단체)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연혁/유래/특징			
관리단체(안)	단체명	대표자	
	선정사유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 의견 및 시·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유산 도면자료 5.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문화유산 사진자료 7.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유산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2.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에 한정한다)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 요령 및 첨부 유의사항

1. 지정 종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유형/종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건축문화유산/궁궐, 미술문화유산/산수화)
3. 명칭
 - 가. 문화유산의 성격·유형·시대 등 그 대표성·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 나.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유산이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 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4. 시대/연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 다만, 건립·제작·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
5. 소재지
 - 가.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 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6. 구조/형식/형태: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형태 등을 적습니다.
7. 재료/재질: 문화유산을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
8. 수량/규모/크기: 해당 문화유산(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9. 현재의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10. 소유자: 해당 문화유산(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11. 연혁/유래/특징
 - 가. 문화유산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 나.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2. 관리단체(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1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1)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민속적·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민속적·기술적 가치 등)
 - 2) 진정성·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
 - 나.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문화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4. 첨부 유의사항
 - 가. 첨부서류 제4호의 도면자료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말합니다.
 - 나. 첨부서류 제5호의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고증자료는 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합니다.
 - 다. 첨부서류 제6호의 문화유산 사진자료는 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및 2,000×1,500 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적·서적의 경우 표지 및 본문 전체, 회화·조각·공예 등의 경우 전체 및 세부상세[전·후, 좌·우, 상·하, 화기(畫記, 그림이나 불화 등에 제작 경위와 참여자 등을 적은 기록), 제발(題跋, 서화나 책 등의 첫머리와 끝머리에 적은 글을 아울러 이르는 말), 명문(銘文, 쇠·비석·그릇 따위에 새겨 놓은 글), 문양, 부속물, 보호시설, 복장유물 등] 사진을 컷별로 용량이 5MB 이상이며 해상도가 300dpi 이상인 JPG파일로 제출합니다.
 - 라. 첨부서류 제7호의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은 각각 위치도, 지적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수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셰이프(SHP)파일을 말합니다.
 - 마. 첨부서류 제11호의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건조물이 아닌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구입품인 경우 매매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문화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유산이 건조물인 경우

(면적: m²)

연 번	명칭	시대 /연 대	구조/형 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								
				()								
계				()								

☐ 문화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구역)

(면적: m²)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m²)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m²)

연번	명칭	구조/ 형식/ 형태	크기/ 수량	토지면적	보호물면적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0mm×297mm[백상지(80g/m²)]

문화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주변) 현 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 정·등록 문화유산 분 포 현황		
그 밖의 사항		

방재시설 · 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방재시설 설치현황		
방재시설 설치계획		
방재인력 배치현황		
방재인력 배치계획		
그 밖의 사항		

제 호

국보지정서

명 칭

수 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국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2-001호)

제 호

보물 지정서 국가민속문화유산

명 칭

수 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제26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보물로 / 국가민속문화유산
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 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2-001호)

210mm×297mm [백상지(150g/㎡)]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별지 72]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 호		보물 지정서 부록 국가민속문화유산				
명 칭						수 량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10mm×297mm [백상지(150g/㎡)]

세목번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별지 73]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문화유산의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보호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사유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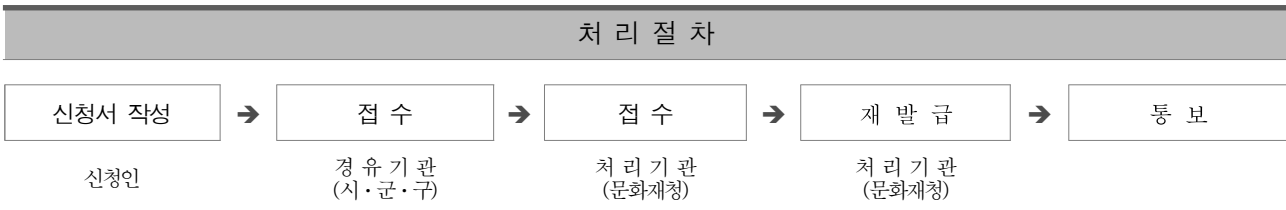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 지정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74]
[별지 제11호서식]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지정 종목	관리 번호	문화유산 명	지 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 유 자		부록	발급 구분	발급 연월일	발급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75]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지정문화유산 지정종류 :

문화유산 명칭 :

지정수량 :

지정일 :

지정받는 자 단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 단체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별지 76]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관 리 단 체				대 상 문 화 유 산					관리 기간	지정일	발급자
	단체명	주 소	대 표 자		종류 및 관리번호	명 칭	소재지 (보관 장소)	수량/면적 (㎡)	소유자			발급일
			성명	생년 월일								

작성요령

- 1. 발급번호란에는 지정일 순으로 적습니다.
- 2. 주소란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합니다.
- 3. 지정일란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날짜 등을 병기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77]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대 상 문화유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 보호물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수리·정비·복 구·보존처리· 철거하는 행위	[] <삭 제>	[] 건축물·도로· 관로·전선·공 작물·지하구조 물 등의 신축· 증축·개축·이 축·용도변경 (지목변경의 경 우는 제외합니 다)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 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 립·간척·땅파 기·구멍뚫기·땅 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수질 및 수량 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악 취 등을 유발하 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 질·먼지·빛· 열 등을 방출하 는 행위	[] 오수·분뇨·폐 수 등을 살포· 배출·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 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골재·광 물 및 그 부산 물·가공물을 채 취·반입·반 출·제거하는 행 위	[] 광고물 등의 설 치·부착 또는 각 종 물건을 쌓는 행 위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함)	[] 건축물 외관 면 적의 4분의 1 이 상에 이르는 디 자인·색채·재 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 설물로서 교 량·등대 등 구 조물 외관 면적 의 4분의 1 이상 에 이르는 디자 인·색채·재 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 설물로서 터널· 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 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설 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등 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 자인·색채·재 질·재료 등을 변 경하는 행위	[] 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동산에 속하는 문화 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 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 수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 료	그 밖 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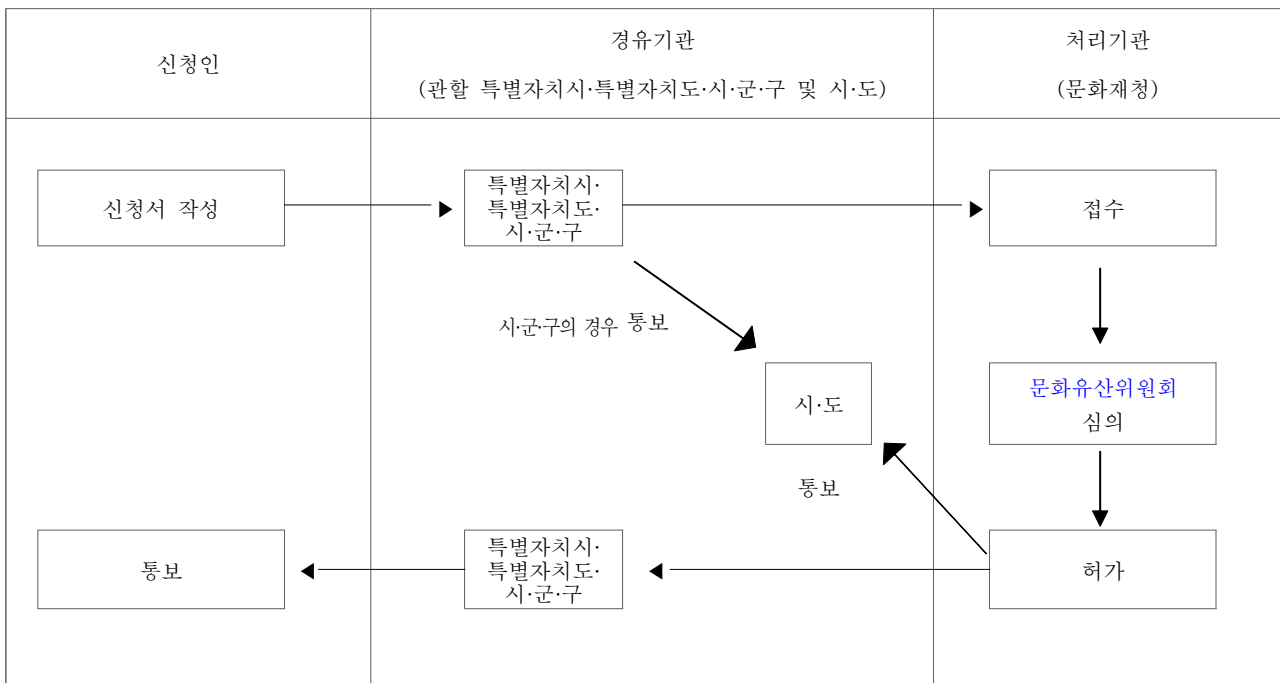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수 수 료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78]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대상 문화유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 보호물									
행 위 유 형	[]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시설물을 설치·증설 하는 행위	[]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 하는 행위	[]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소음·진 동·악취 등 의 유발 또 는 대기오염 물질·화학 물질·먼지 ·빛·열 등 을 방출하는 행위	[]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 을 줄 수 있 는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토지· 임야의 형질 을 변경하는 행위	[] 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 역의 수로의 수질·수량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 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 지를 훼손함 으로써 문화 유산의 보존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삭 제>	[] 문화유산외 곽 경계의 외부지역에 서 하는 행 위로서 문화 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 이 고시하는 행위
	위 치								
신청사항	내 용								
	사 유								
참고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소요경비		원	재원		
	완료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깍기·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신청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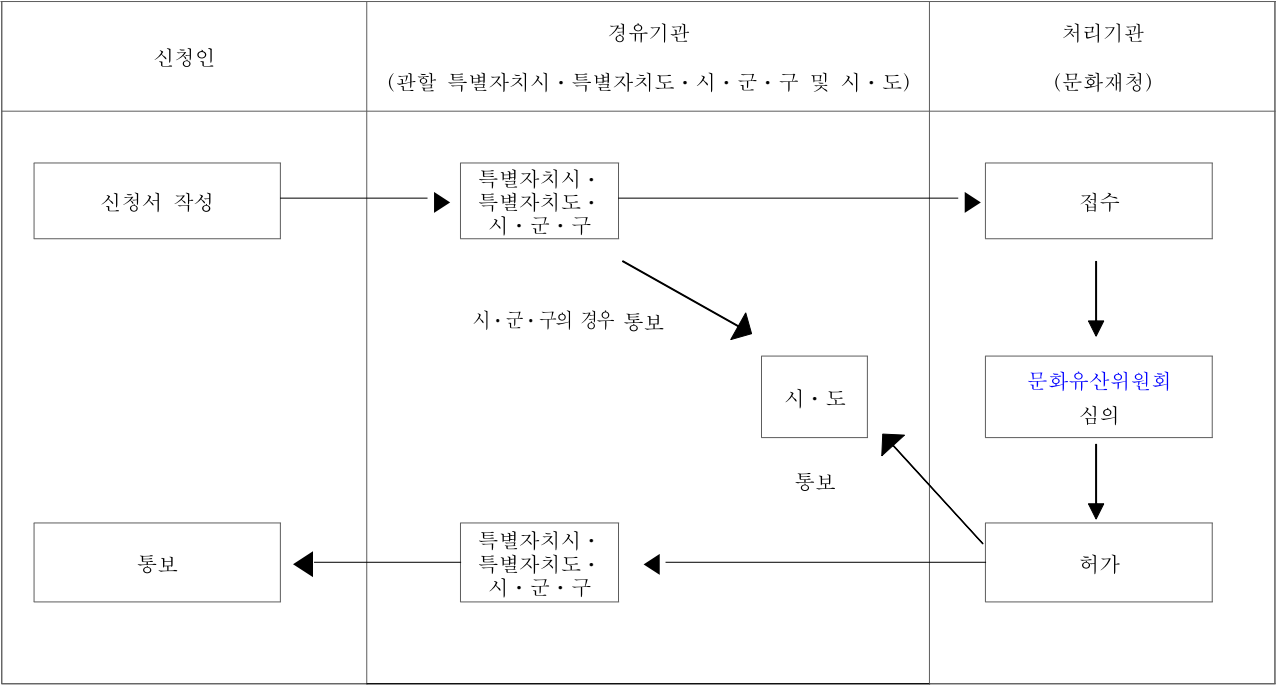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유의사항

- 첨부서류 제1호의 행위 계획서가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위치·대지면적 등),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79]

[별지 제2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 칭			
	종 류			
	소재지(보관 장소)			
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			수 량	
작업 예정 기간	· · 부터 · · 까지	(일 간)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	성 명		주 소	
기술 담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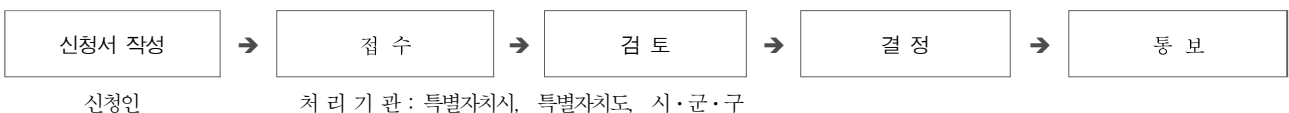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 행위 계획서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80]

[별지 제22호서식]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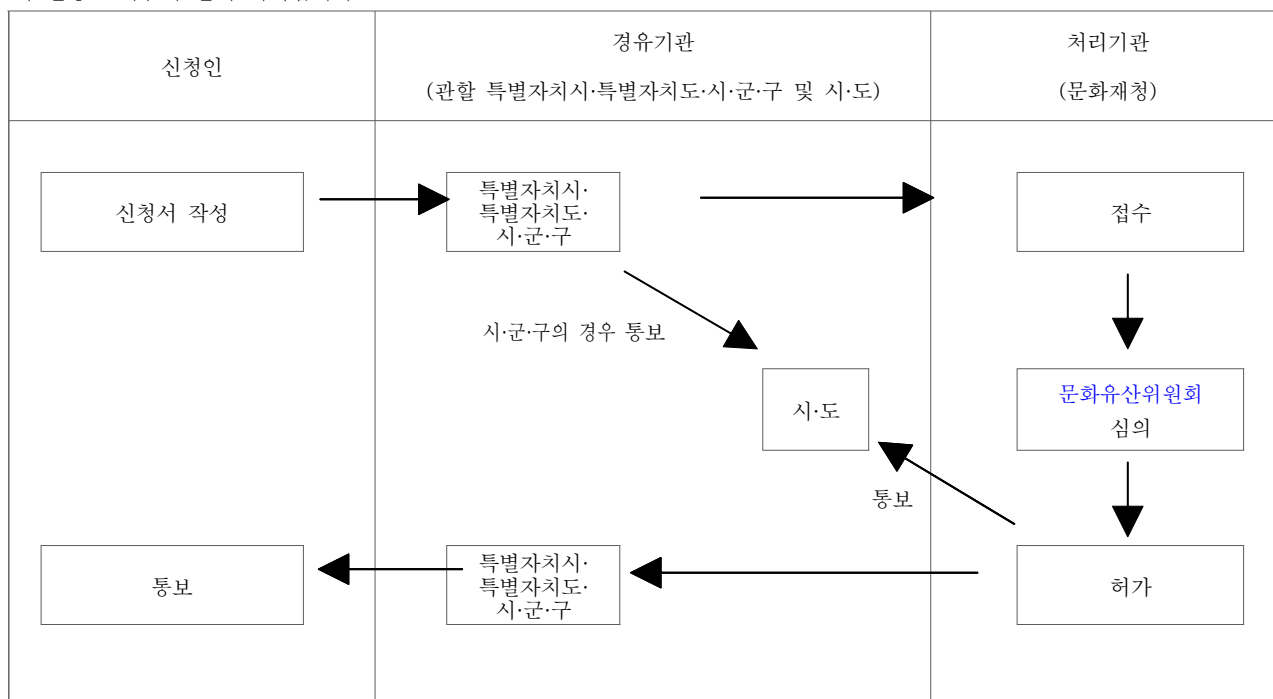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81]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유산	종 류	명 칭	
	소재지(보관 장소)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작 인			

210mm×297mm[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82]

[별지 제24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유산	종 류	명 칭
	소재지(보관 장소)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작 인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83]
[별지 제24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

구분	허가번호	허가받는자		대상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착공일자	비고
	허가일자	성명	주소	종류	관리번호	명칭	사업명	위치	내용	기간연장	완료일자	

작성방법

- ※ 구분란에는 허가인 경우 "1번", 변경허가인 경우 "2번"으로 표기함
- ※ 기간연장란은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연장된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84]

[별지 제28호서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규격			보관 장소		
반출목적					
반출대상국가			보험 방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입예정연월일		
반출 담당자	성명				
	주소				
반출 중 보호방법					
반출에 관한 협약 내용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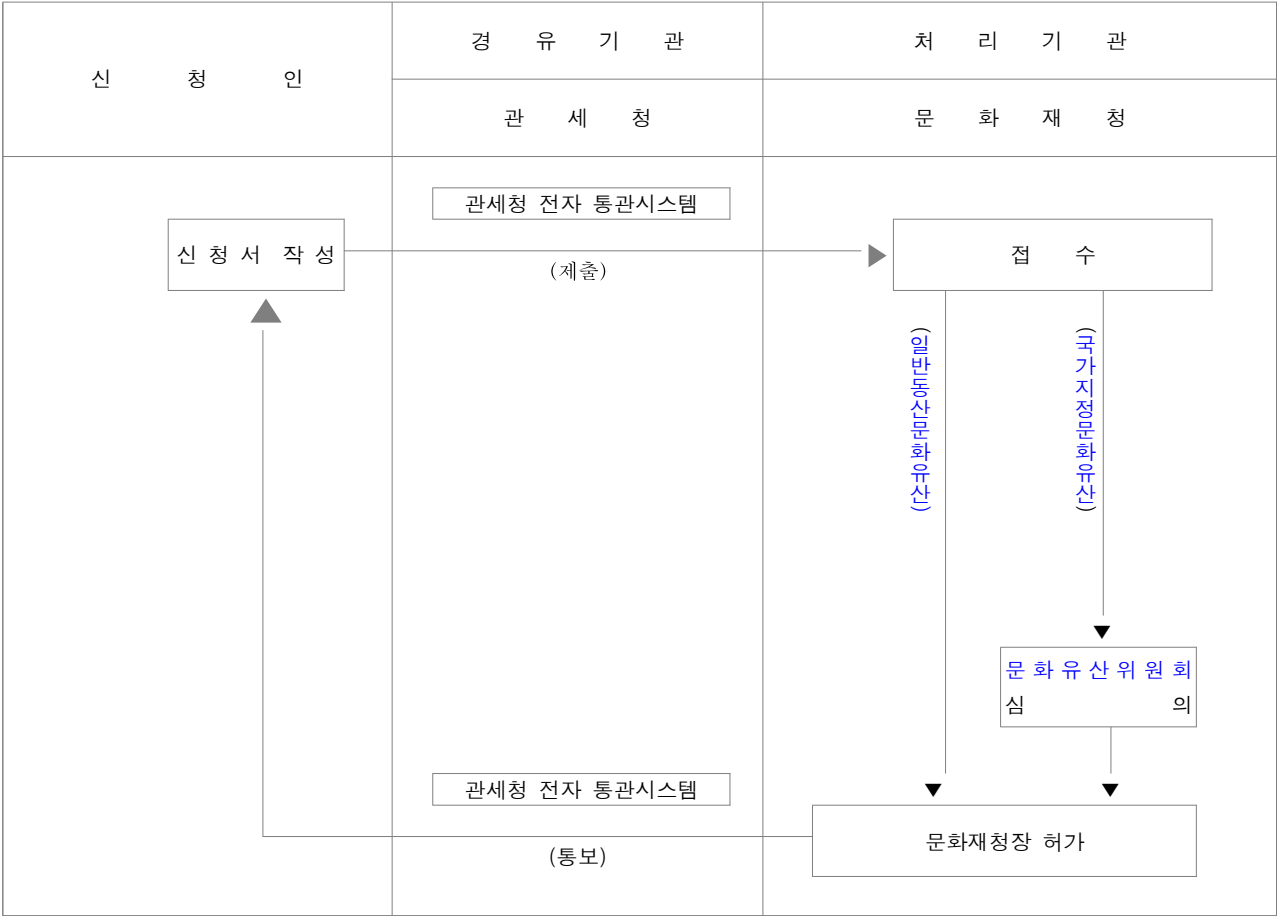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별지 85]

[별지 제28호의2서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

장 직인

행정사항

-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43조제7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86]

[별지 제29호서식]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허가번호 및 연월일				
당초의 반출·입 예정 연월일				
연장허가 신청 반출·입 연월일				
연 장 사 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그 밖 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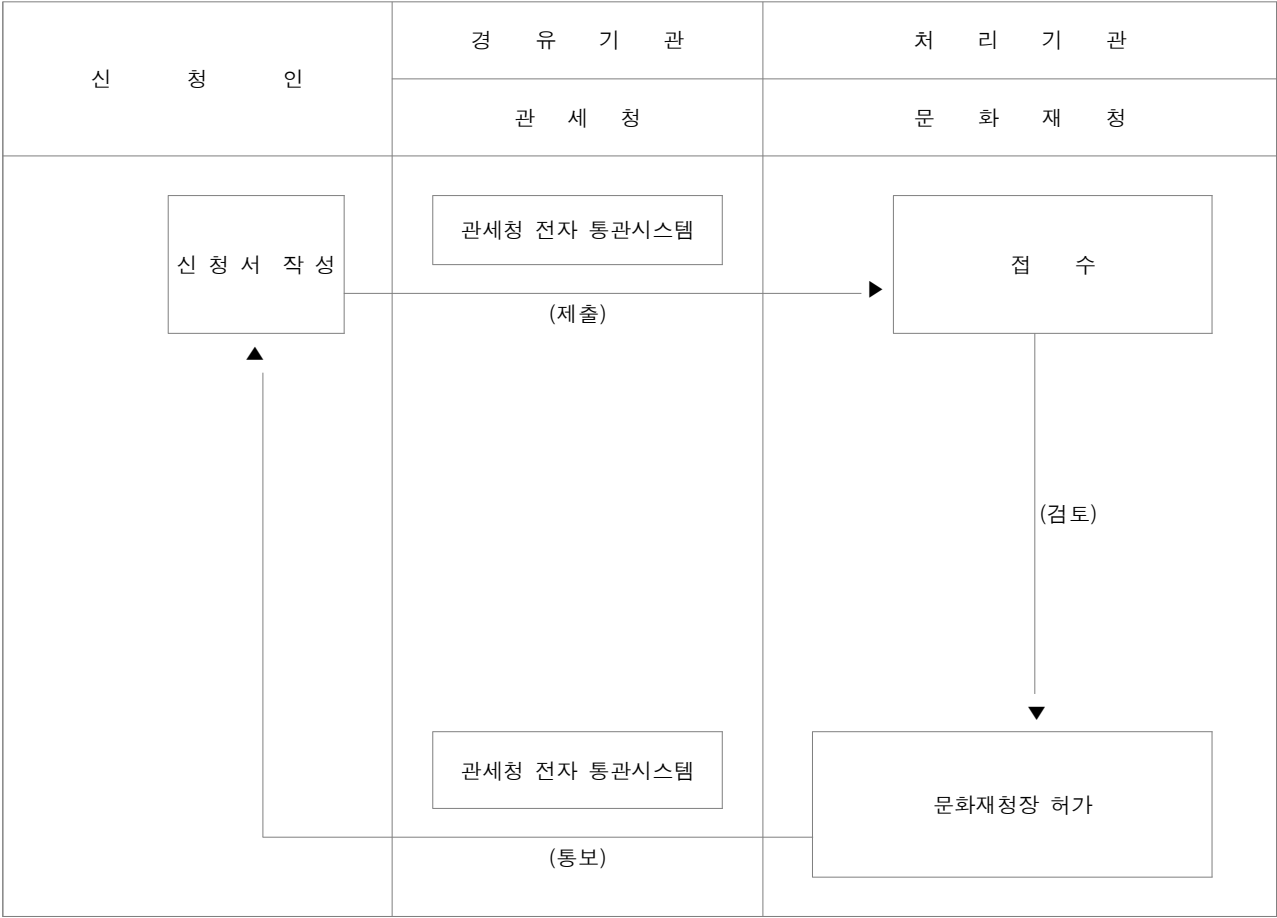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당초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별지 87]

[별지 제29호의2서식]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명칭	
	규격	수량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당초 반출기간(전시기간)	변경 반출기간(전시기간)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및 제60조제9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4.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제43조제7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별지 88]

[별지 제31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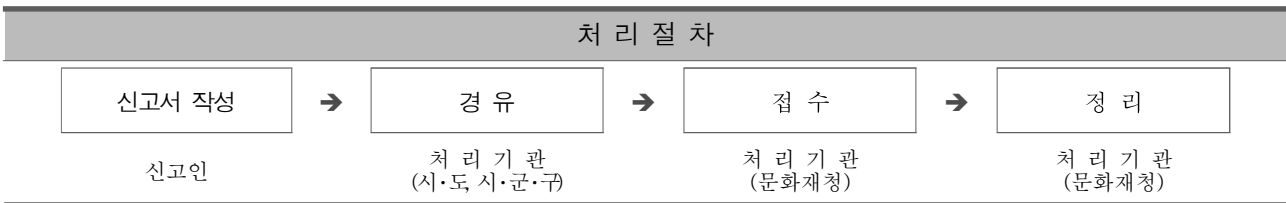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문화유산의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전화번호:)			
관 리 자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유		(선임·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제55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선임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89]

[별지 제32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문화유산의 명칭		종 류		수 량	
소재지또는보관장소					
보호구역·보호물					
소 유 자	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3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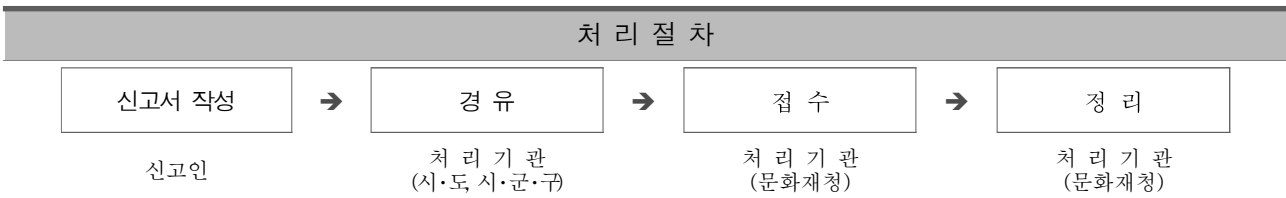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구) 성명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수 수 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90]

[별지 제33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 화 유 산 의 명 칭			종 류		수 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 호 구 역			지 목		지적
변 경 사 유			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		신			
		구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8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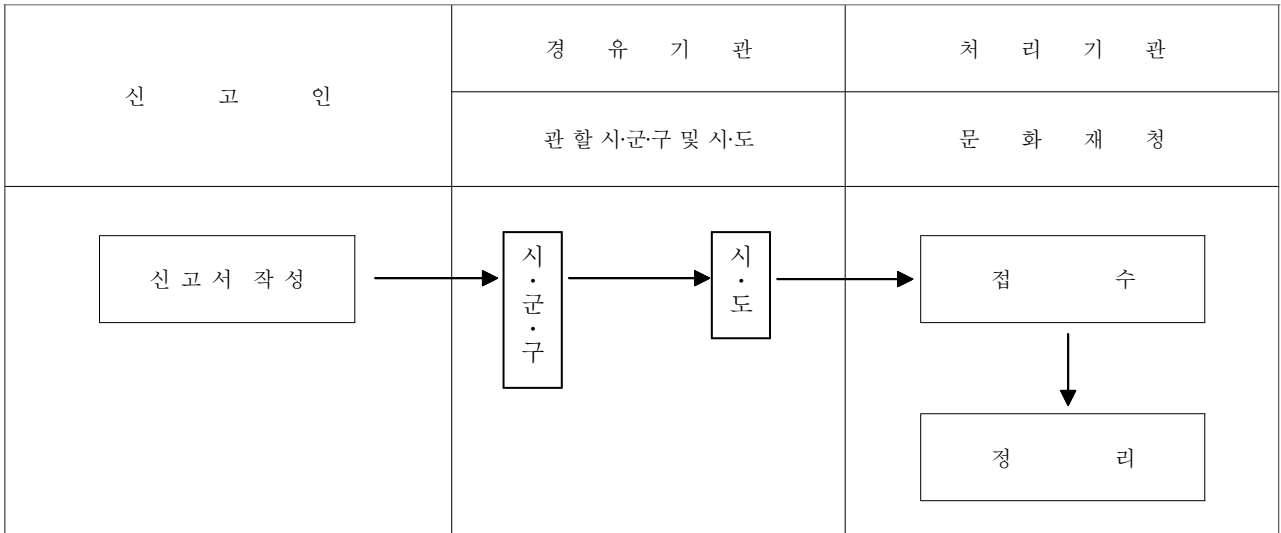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수량	점
--------------	----	---

보호물 · 보호구역 명칭

신고내용	사 고 연 월 일
	사 고 내 용
	사 고 경 위
	조 치 내 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3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만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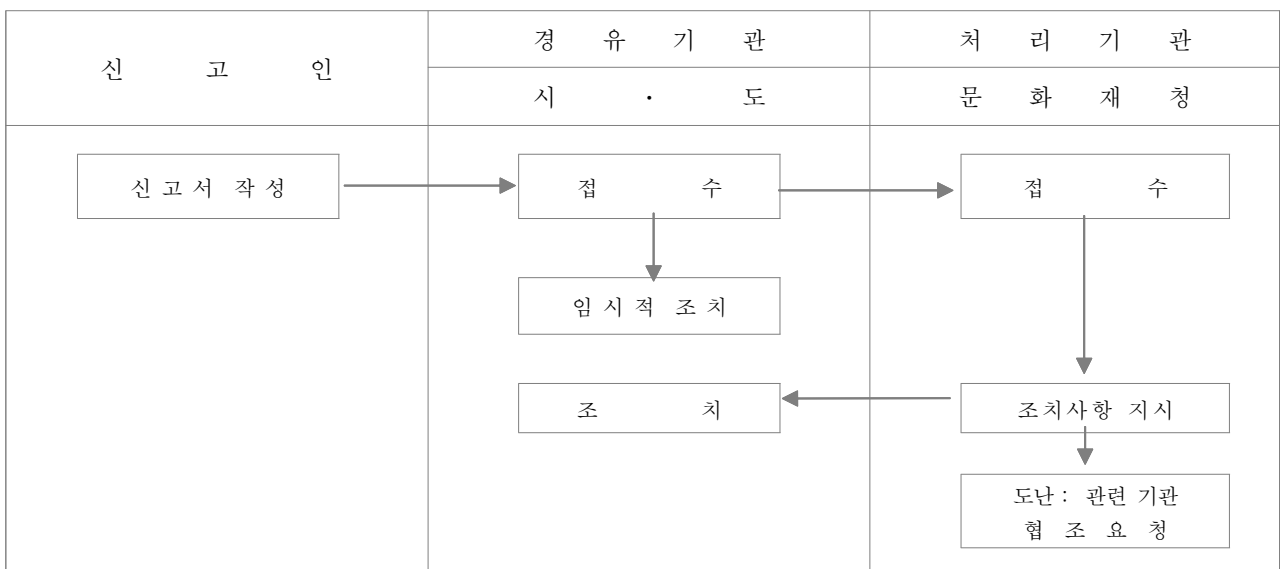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관련 사진	수 없	수 음	료 음
------	---------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92]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시·도 1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		
공 사 내 용	명칭	
	내용	
착 공 연 월 일	.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가, 명령 연월일		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	업 체 명	공 사 금 액 원
	감독자명	
그 밖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제40조제3항·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제3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착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93]

[별지 제36호서식]

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문 화 유 산 명 칭		종류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 출 · 반 입 연월일	반 출	반 입			
반 입 · 출 입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 관 장 소	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유 산 현 황					
그 밖 의 사 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제55조제8호·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2호·제38조제6호·제4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의 국내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세 청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접 수
	(제출)	

문화유산 반입 신고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별지 94]

[별지 제49호서식]

(7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문화유산 종류		관리번호 제 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 작 자		규격/크기
수 량 / 면 적		연대/시대
소 재 지 / 보 관 장 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 리 단 체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 유 래 , 전 설)		
현 황		

210mm×297mm[백상지(80g/㎡)]

문화유산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문화유산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제 목		종 류		작성일자	

세목별 세부사항 부록

[illegible]

[별지 제51호서식]

문화유산 종류:

[illegible]

– 202 –

[별지 제52호서식]

소재지별:

[illegible]210mm×297mm[백상지(80g/m²)]

[별지 97]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제 호
문화유산조사원 신분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문 화 재 청

60mm×90mm[백상지(120g/㎡)]

(뒤쪽)

문화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문화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98]

[별지 제63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대상 문화유산	명 칭	지정 종류		
소 재 지	(전화번호:)			
공 개 제 한 사 항	제한 사유			
	제한 기간			
	제한 지역			
출 입 허 가 신 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출 입 자	
	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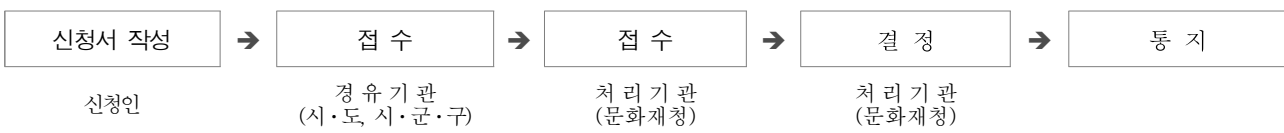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99]

[별지 제63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유산	명 칭		지정 종류		
	소 재 지				
허가 사항	출입목적				
	출입기간				
	출입지역				
	출입인원				
허가 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지역 출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작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00]

[별지 제64호서식]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성명(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사업명					
-----	--	--	--	--	--

신청예산	금	원(	)		
------	---	----	---	--	--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기타
			광역	기초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주요 사업내용:				
------	---	--	--	--	--

공개대상 문화유산	문화유산명		소재지	
-----------	-------	--	-----	--

관람료 감면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관람료 징수현황	징수연도	관람객수(명)			관람료 수입(원)	비고
		유료	무료	합계		

사업담당자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대리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작성)	
	기관명(부서명)		기관명(부서명)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통지 및 지급

신청인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별지 101]

[별지 제66호서식]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사업명:

1. 문화유산 현황

가. 지정별: ○○(. . 지정)

나. 명칭:

다. 수량:

라. 소유자(보유자):

마. 관리자:

바. 관리단체명:

사. 소재지(보관 장소): (동·리·번지까지 기재)

아. 주요 연혁 및 특징:

자. 지정면적(보호구역 포함): m²(국·공유지: m², 사유지: m²)

○ 문화유산구역(지정구역): m²(국·공유지: m², 사유지: m²)

○ 보호구역: m²(국·공유지: m², 사유지: m²)

차. 유적의 현황 및 주변 환경

※ 간략하면서도 사업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연도별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집행 상황 등)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소요예산·사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내용:

나. 추진기간:

다. 총사업비:

라. 연차별 추진계획:

5.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업내용	사업비				신축내역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기타)		
계						

※ 사업 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그 밖의 참고자료

※ 보충 설명자료는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계획 조감도·위치도·지적도(사업대상범위 표시)

※ 토지매입계획(전체 계획, 그간 추진 실적, 금년 계획, 향후 계획/ 소유자 동의서 등)

※ 기타 종합정비계획(문화재청 협의 결과), 관계 전문가 검토·자문의견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시도별	소재지	지정별	문화유산명	사업 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 교부 조건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별지 제68호서식]

○ 회계연도: 년도(집행, 이월 구분작성)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별지 104]

[별지 제69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도	수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혁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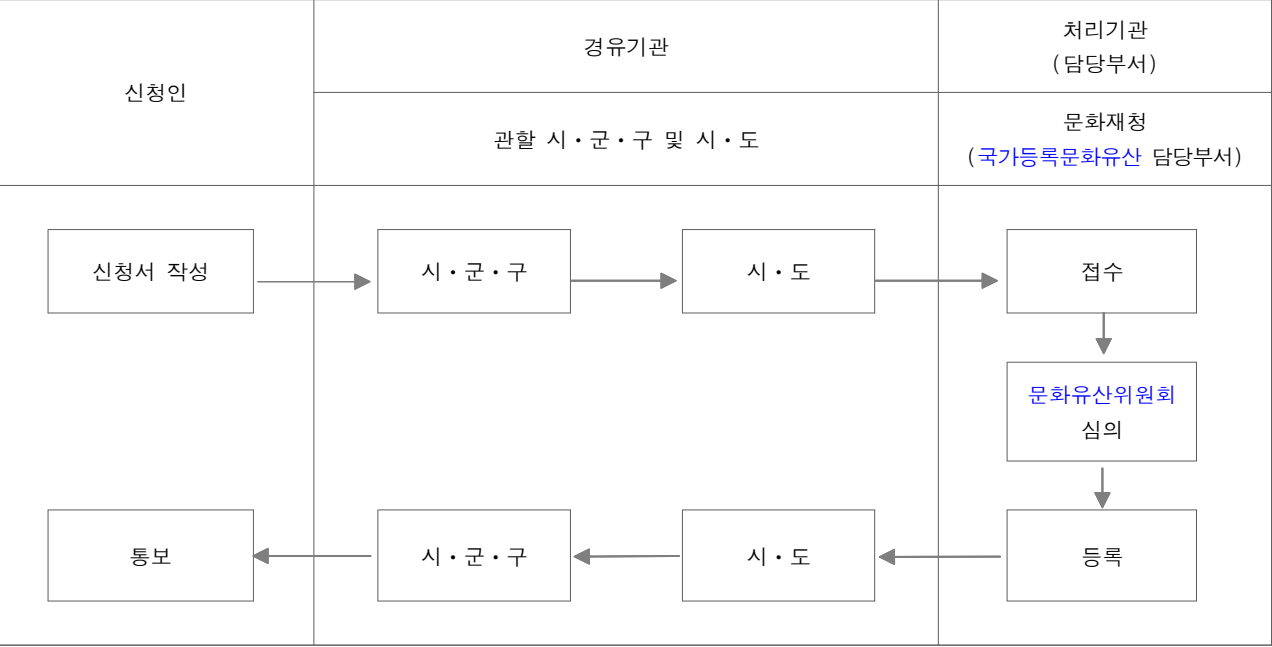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문화유산 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대상 문화유산 의 사진·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 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 의견 및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관계 자료 3. 건축물대장 4. 토지(임야) 대장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9호의2서식]

등 록 대상물명		사용용도	원)
소 재 지		용도지역	현)
소 유 자		국유[], 공유[], 사유[]	
문화유산적 특 징			
보존관리 현 황	보존상태		
	관리인력		
	보수관리 실 적	(시기, 사업비, 내용 등)	
	기 타		
활용계획	목 적 • 필 요 성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	(재원 부담주체 :)	
지 자 체 검 토 의 건	계획적정성		
	유사사례		
	종합의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214 –

[별지 106]

[별지 제70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5쪽 중 제1쪽)

관 리 번 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 식 / 형 태
(제) 작 자		규 격 / 크 기
수 량 / 면 적		연 대 / 시 대
소 재 지 / 보 관 장 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관 리 단 체	주 소	
	단체명	전 화 번 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 유		
내 용 (연혁, 유래, 전 설)		
현 황		

210mm×297mm [백상지(80g/㎡)]

문화유산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명 □□□□□ 제 00호 □□□□□

등 록 현황

[illegible]

문화유산명 □□□□□ 제 00호 □□□□□

특례적용 현황(건폐율 · 용적률 완화, 국고보조금)

[illegible]

문화유산명 □□□□□ 제 00호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별지 107]

[별지 제71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 지도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시·도 경유 20일)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소유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관리단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문화유산의 현재용도			
기술 지도 요청사유			
기술 지도 요청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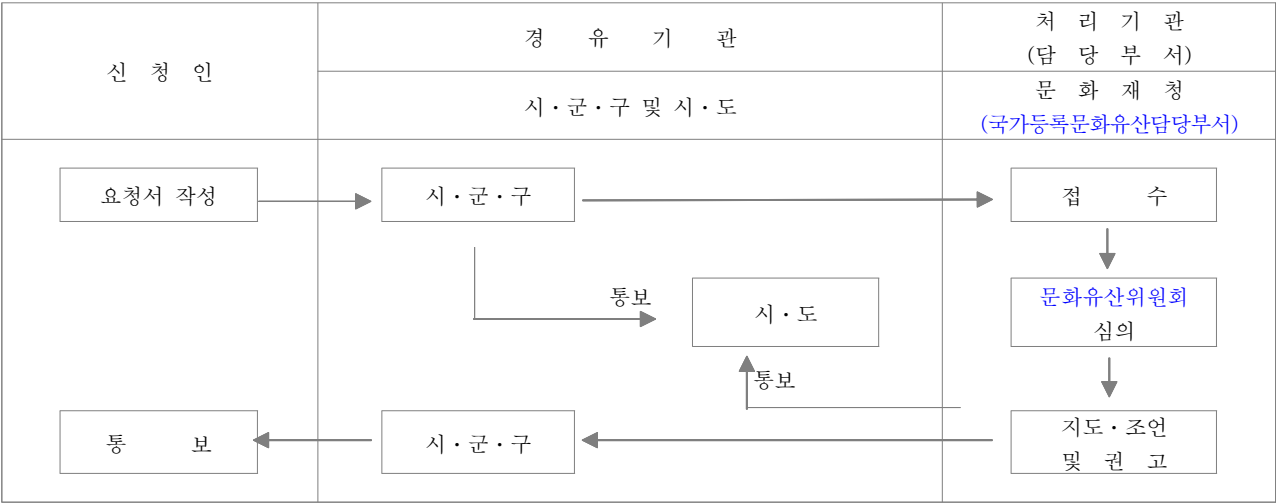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내역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108]

[별지 제72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시·도 경유 2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유산	명 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시 행 자	업체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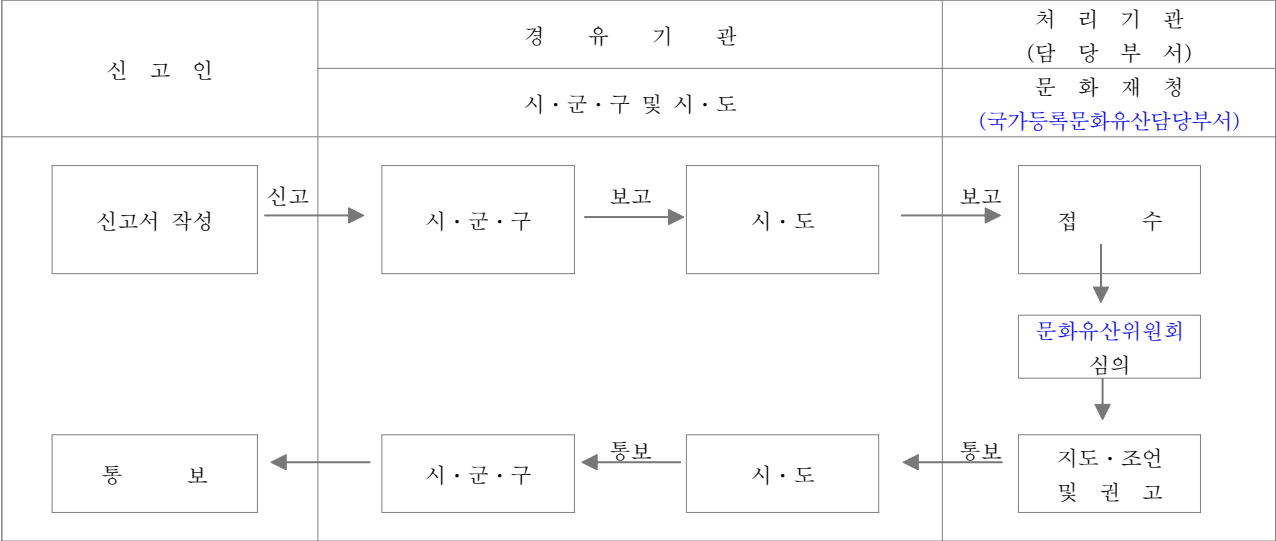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 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2-001호)

210mm×297mm [백상지(150g/㎡)]

[별지 제74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111]

[별지 제76호서식]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단 체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문 화 유 산 명 칭			
종 류		수 량	취득경위
규 격		반출 전 소유자	반출방법 [] 구입 [] 기증
목 적			
반 출 국 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반출 중 보호방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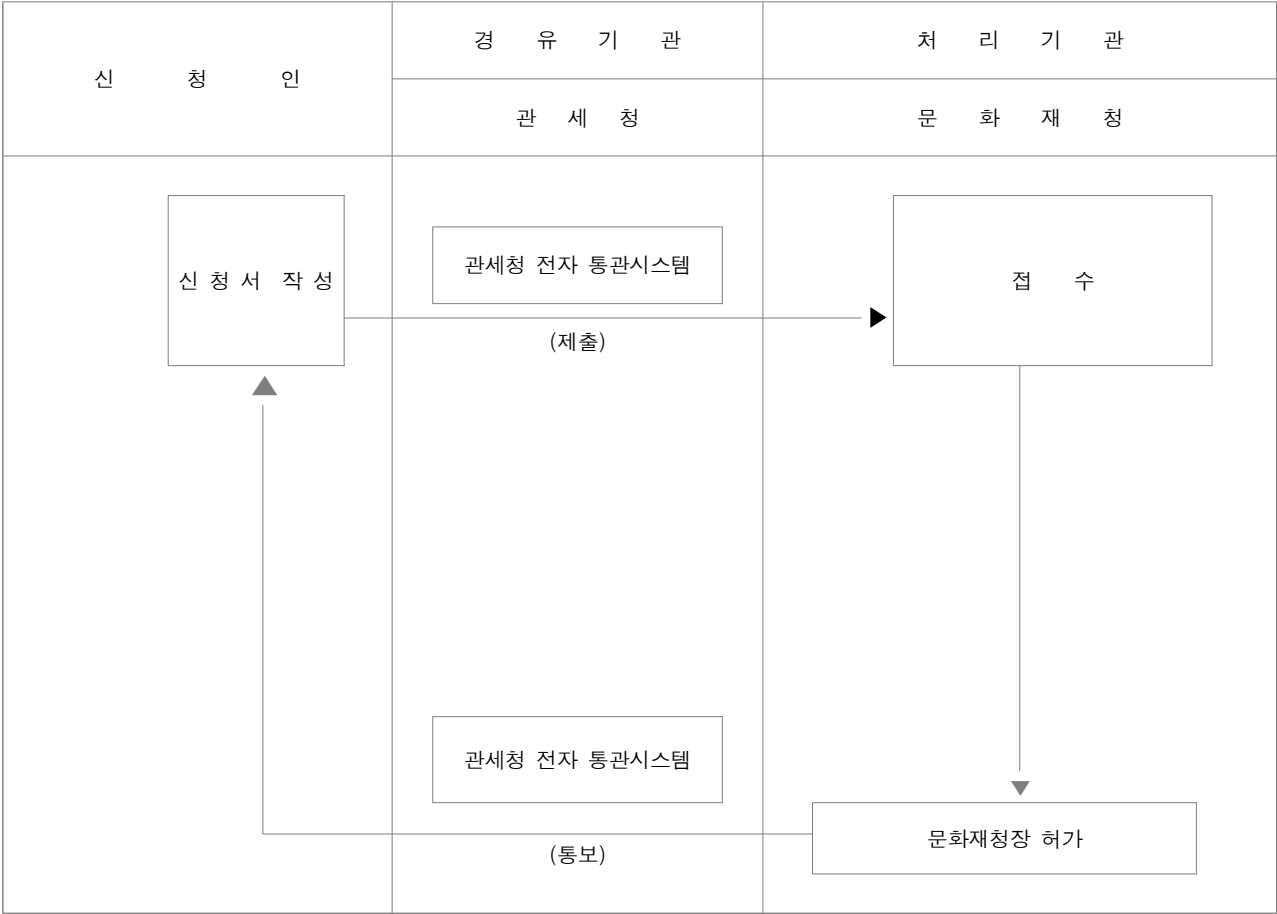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취득 경위서 1부 2. 문화유산 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1부 4. 보험증서 사본 1부 5.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합니다) 1부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별지 112]

[별지 제77호서식]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	수량
	규격	반출방법 [] 구입 [] 기증
허가사항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연월일
	전시명	
허가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장 직인

행 정 사 항

-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명칭		문화유산의 사진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별지 제78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자가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서명 또는 인)

번호()

사 진
(15cm × 10cm)

번호()

사 진
(15cm × 10cm)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감 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별지 제78의2호서식]

(앞쪽)

발급번호

신청자
(반출자)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국적

반출방식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고유)번호)

(전화번호: 국내 국외 /전자우편:)

도착국

통관세관 또는 우체국명
* 수출화물 · 우편물의 경우 기재

번호

품 명

수 량

규 격

확인필증 번호
* 휴대품의 경우 기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 물품은 국외반출이 가능한 비문화유산임을 확인합니다.

이
계
표

문화유산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유산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 청장

작 인

() 문화유산감정관실 / 전화번호 ()

※ 본 확인서는 상기 물품의 국외반출을 위한 서류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번호()

사 진
(15cm × 10cm)

번호()

사 진
(15cm × 10cm)

* 수출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에만 사진 첨부

[별지 제79의2호서식]

()문화유산감정관실

[illegible]

– 236 –

[별지 116]

[별지 제80호서식]

일반동산문화유산 현황 조사서									
소장기관	기관명				주소				
	관리부서명				연락처				
	설립연도				상급감독기관				
관리대상 문화유산 총괄 현황	소유별	국유	건		지정별	국가지정		건	
		공유	건			시·도지정		건	
		사유	건			비지정		건	
문화유산 관리시설 현황	전시공간	개실 (연면적 m ²)							
		hangonhangshup		hwaesagamsi		donangamsi		gita	
	수장공간	개실 (연면적 m ²)							
		hangonhangshup		hwaesagamsi		donangamsi		gita	
특기사항	※ 시설 노후 정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일반동산 문화유산 현황	유형별 수량 (소장기관 분류기준 적용 가능)	회화류			건	근대매체			건
		조각류			건	고고자료			건
		공예품			건	자연사자료			건
		전적류			건	과학기술용구			건
		고문서			건	민속문화유산			건
		서간류			건	외국 문화유산			건
		서각류			건	기타			건
	관리상태확인	확인주기				최종 확인			
	특기사항	※ 문화유산 지정 추진대상 또는 관심대상 문화유산 등							
조사자의견									
조사 일시: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소장 문화유산 목록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117]

[별지 제81호서식]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개별 현황 조사서			
문화유산명 (한 자)	()		소장기관명
소장연월일			보관 장소
수량 및 제 원	수 량		재 질
	규격(cm)		연 대
소 유 자	국유(), 공유(), 사유()		소장 경위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보존관리 환 경	보관시설		
	관리인력		
	특기사항		
문화유산 보존 상황	보존상태		
	손상내용		
참고사항 (연구실적 및 관리계획 등)			
조 사 자 의 건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현황 사진(상세사진 포함) 2. 문화유산 세부 목록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118]

[별지 제82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영 업 장 주소지	(전화번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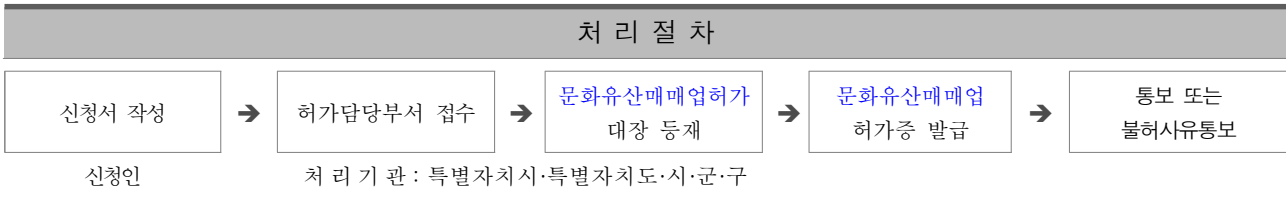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사진(3cm×4cm) 1장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19]

[별지 제83호서식]

허 가 번 호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				대표자 사 진 (3cm×4cm)	
제 호						
상 호						
허가 연월일						
영업장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허가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사항(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 내용	처분기간	처분 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120]

[별지 제84호서식]

제 호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상 호		
영업장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준수사항 및 신고의무 사항	○ 준수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 신고의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 제4항,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6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로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작 인		
※ 이 허가증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21]
[별지 제85호서식]

문화유산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 신고대상 :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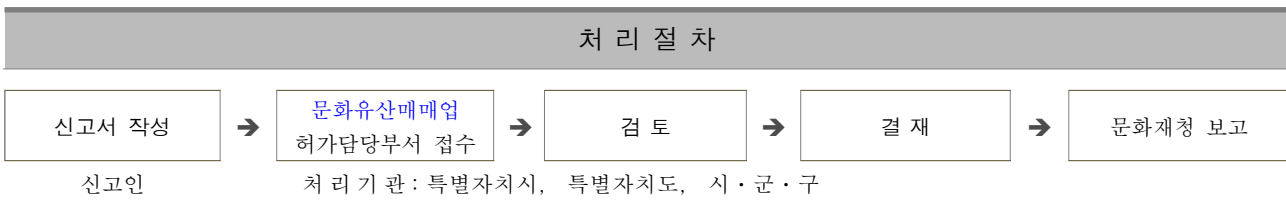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영 업 장 소	(전화번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문화유산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점)

상호명 (대표자)	구분	전년도 소 장	연간 반입			연간반출			금년도 소장
			매입	교환	계	매도	교환	계	
	전적								
	회화								
	조각								
	공예								
	도자								
	기타								
	계								

[별지 122]
[별지 제85호의2서식]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허가 사항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현재 허가받은 상호		
영 업 장 주 소 지	현재 허가받은 영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장 주소지 (전화번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서류	상호·영업장주소지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변경하고자 하는 영
업장 주소지의 허
가담당부서 접수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현재 허가받은 기관으로
부터 허가대장 이첩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

→

변경신고사항을 허가대
장에 등재하고 문화
유산매매업 허가증 발
급

→

통보 또는 불허사유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23]
[별지 제85호의3서식]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승계사유	[] 양도·양수 [] 그 밖의 사유()			
분실사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 (인)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문화유산매매업 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문화유산매매업 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유의 사항

매매업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매매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체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5조의2, 제78조, 제80조 및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별지 제86호서식]

※ 신고대상 :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것

[illegible]

– 247 –

문화유산매매장부

번 호	문 화 유 산 명	번 호	문 화 유 산 명
	사 진 (12cm×8cm)		사 진 (12cm×8cm)
번 호	문 화 유 산 명	번 호	문 화 유 산 명
	사 진 (12cm×8cm)		사 진 (12cm×8cm)

[별지 125]
[별지 제87호서식]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소 (전화번호:)						
허가사항	허가 번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검인 신청 장 부	장부구분	장부 수량(권)	장부 권별 구분		면수 표시		
	매 입						
	매 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매매장부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유산매매장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26]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제 호	허가 연월일	
상 호			
영업장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폐 업 일			
사 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매매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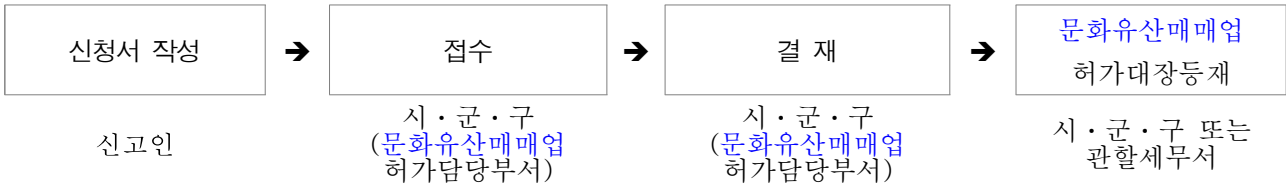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	수수료 없음
------	---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27]
[별지 제88호의2서식]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기관 또는 단체	기관(단체) 명칭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명칭	대표자명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소재지 (전화번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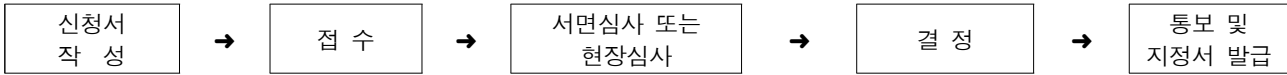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사업계획서 2. 시설 보유 현황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

1. 기관(단체)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129]

[별지 제89호서식]

접수번호	제 보 조 서					
제보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
제보내용						
제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접수자	소속기관명					
	직위			직급		
	성명					
	접수경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130]
[별지 제90호서식]

문화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원인	사건명				
	공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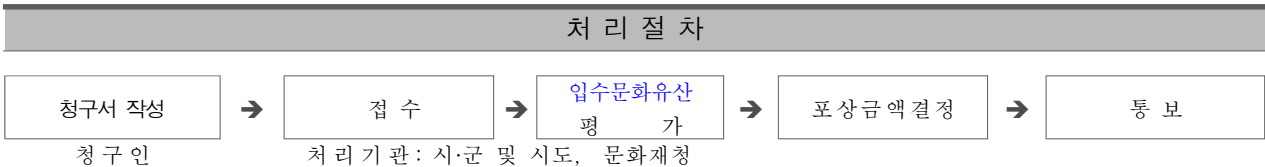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제보자	1.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체포 공로자	1. 기소유예 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서류 등) 1부 3.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31]

[별표 1]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 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가. 한식목공	대목수	대목장
	소목수	소목장
나. 화공		단청장, 불화장(불교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장인)
다. 번와와공(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번와장(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을 하는 장인)
라. 제작와공		제와장(전통 한식기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
마. 철물공		두석장(놋쇠를 오리거나 새김질하여 기구의 장식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
바. 조각공	목조각공	목조각장
사. 칠공		칠장
아. 표구공		배첩장(서화나 자수를 족자, 액자, 병풍, 서첩 따위로 꾸미는 장인)
자. 그 밖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2.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 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가. 한식목공	대목수	대목장(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대목장(경기도 무형유산)
		대목장(강원도 무형유산)
		대목장(충청북도 무형유산)
		서천대목장(충청남도 무형유산)
		대목장(전라북도 무형유산)
		대목장(경상북도 무형유산)
나. 철물공		두석장(경상남도 무형유산)
다. 그 밖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

1.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text{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 = \text{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계산식 중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 \text{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

- 1) 국가유산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다.
- 2)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 3)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 4)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국가유산수리실적액을 연평균국가유산수리실적액으로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자본금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실질자본금의 평점}) \times 70/100$$

- 1) 자본금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실질자본금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자본금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하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로 본다.
- 3)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실질 자본금 규모	등록기준 자본금 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 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 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 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 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체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인력수} \times 30/100$$

- 1) 기술능력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체의 기술인력(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1인당 평균생산액은 국가유산수리업체의 국내 총기성액을 국가유산수리업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총수는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체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국가유산수리업체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 3)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라. 위의 산식 중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경력평가액} = \text{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times \text{국가유산수리업영위기간 평점} \times 10/100$$

- 1) 국가유산수리업영위기간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산정일까지로 한다.
- 2) 국가유산수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국가유산수리업 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1.5
국가유산수리업 기간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평점	1.6	1.7	1.8	1.9	2.0	

마.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신인도평가액} = \text{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 \times \text{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구분	신인도 반영비율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제5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단, 이수자가 6명이 이상인 경우 6명으로 함)	+0.5/100× 이수자 수 +4/100
나) 최근 1년간 법 제54조에 따라 우수업자로 지정된 경우	
다)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이 건설업기준 재해율 이하인 경우	
1) 40% 이하인 경우	+3/100
2) 40% 초과 70% 이하인 경우	+2/100
3) 7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1/100
라) 최근 1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100
마) 최근 1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6개월 초과	-5/100
(2)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3/100
(3) 3개월 이하	-2/100
바) 최근 1년간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100
사) 최근 1년간 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100

2. 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국가유산**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8조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	자격취소		
다.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			
1)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주요부를 소실·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변형·탈락 또는 파손시켜 지정유산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1)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탈락 또는 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3)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1) 국가유산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등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	법 제6조제3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은 경우				
5)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8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자.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48조	자격취소		
차.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48조	자격취소		
카.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들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48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파.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법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 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 일 이상 이탈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거.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국 가유산감리원 의 업무범위 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1호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일 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 리원 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책 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 리원 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목조건조물: 기초부 또는 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 석조건조물
 -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牆) 또는 성문·암문(暗門: 망루 없이 만든 문)·수문(水門)
 -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 고분·능·분묘·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 기념물: **문화유산의 몸체나 제2호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 불상·벽화·괘불(掛佛: 불보살 및 경전 내용을 그려서 야외법회 시 걸어놓는 예배용 불화)·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
- 그 밖의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해당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 또는 조경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국가유산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마.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국가유산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인문학적·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여 보존처리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수립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등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제3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존처리계획에 맞지 않게 보존처리를 수행한 경우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자.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를 소실·변형·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7)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영 제18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발주자의 현장 배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술자를 4개 이상의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가 발주자의 현장 배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며.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이 등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리등 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牆)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유산**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벽화·패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

(5) 그 밖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별지 135]

[별표 3]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 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필기시험)	3만원
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면접시험)	2만원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소목수,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잡는 사람), 제작와공, 목조각공, 조경공, 훈증공, 실측설계사보]	2만원
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대목수, 가공석공, 철물공, 석조각공, 세척공, 보존처리공, 모사공)	3만원
마. 국가유산수리기능자[쌓기석공, 번와(翻瓦)와공, 한식미장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식물보호공, 박제 및 표본제작공, 온돌공]	5만원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5천원
3.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	5천원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가. 종합국가유산수리업	5만원
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3만원
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	3만원
라. 국가유산감리업	3만원
5.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5천원
6.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급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8. 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현황조사	○ <u>국가유산수리</u> 전 사전조사 및 <u>국가유산</u>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u>국가유산</u>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u>국가유산수리</u> 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10
2. 시공관리	○ <u>국가유산수리</u> 계획의 수립·실시 ○ <u>국가유산수리</u>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15
4. 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u>국가유산수리</u>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u>국가유산수리</u>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안전 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10
6. 현장관리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u>국가유산감리원</u> 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국가유산수리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지 137]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기본조사	○ 국가유산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0
2. 실측조사	○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5
3. 내역산출	○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 단위 수량당 단가의 적정 여부 ○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20
4. 도서작성	○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날인 여부 ○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25
5. 그 밖의 항목	○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여부 ○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1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조사 등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2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10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

[별지 138]
[별지 제1호서식]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상호(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신청 내용	인증신청품목				
	제품생산 개시연도		연간생산 가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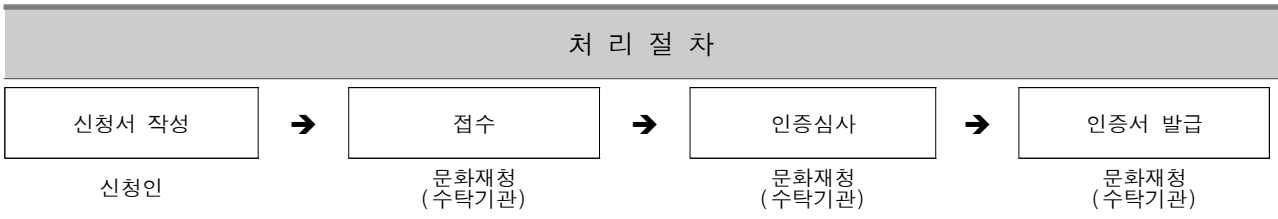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재료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2. 생산시설 현황 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 4. 생산인력 현황 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39]
[별지 제1호의2서식]

응 시 원 서

(앞쪽)

"※"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년도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① 수험번호	※										사 진 (3.5cm × 4.5cm)	
② 종 목			③ 종목번호									
④ 성 명	(한글) (한자)		⑤ 주민등록 번호					-				
⑥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⑦ 주 소									
⑧ 최종학력	[]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 [] 고등학교 [] 기타		과	[] 재학	[] 휴학	[] 졸업	[] 수료					
⑨ 시 험 면 제 신 청 (해당자만 기입)												
⑩ 필기시험 면 제	구 분 사 유		[] 전 과 목 [] 일부 과목									
⑪ 국가기술 자격취득	종 목 명											

.....(자 르 는 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년도 수 험 표											
⑫ 수험번호	※		⑬ 종목			⑭ 종목번호					
⑮ 필기시험 면제과목	[] 전 과 목 [] 일부 과목										
⑯ 성 명							⑰ 생년월일				
⑱ 시험 일시 및 장소											

※ 주의사항

- 응시자격이 제한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종목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토·일요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 증명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실기시험 수험자는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지침공고목록」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2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문화재청)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www.q-net.or.kr, 각종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직 인

210mm×297mm[백상지(80g/㎡)]

응시원서 작성방법

- 이 응시원서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자격을 구분하여 "V"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진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3.5cm×4.5cm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기 바랍니다.
- 3. 제출일: 응시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 4. 종목 ② ⑬: 응시하려는 해당 기술(기능) 분야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예: 보수)
- 5. 종목번호 ③ ⑭: 응시하려는 종목의 종목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6. 성명 ④ ⑯: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 주민등록번호 ⑤ ⑰: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8. 전화번호 ⑥: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9. 주소 ⑦: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작성하되, 통·반(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0. 최종학력 ⑧: 해당하는 최종 출신학교, 재학, 휴학, 졸업, 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V"표시를 하고 전공 학과 명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11. 면제신청 ⑨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가. 전 과목 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년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인 경우
 - 나. 일부 과목 ⑩: 법률 제1506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

..... (자 르 는 선)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수수료는 기간, 사유 등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시험) 시부터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작성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하여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전자사전, 카메라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 동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해당 종목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9.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공고되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해야 합니다.(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응시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40]
[별지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적을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위 작성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주의사항
이 증명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간 같은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사문서의 위조·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력증명서 작성방법

- ① 성명: 한글로 작성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③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④ 주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작성하되 통·반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 ⑤ 재직기간: 기간을 연·월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⑥ 소속 및 직위: 소속은 해당 기관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⑦ 담당 업무 내용: 담당 업무는 해당 기술 분야(보수,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분야)의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⑧ 각종 증명 발급은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 및 발급해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업무 분야에 종사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업무에 종사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별지 141]
[별지 제3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근무처			
재발급 신청사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
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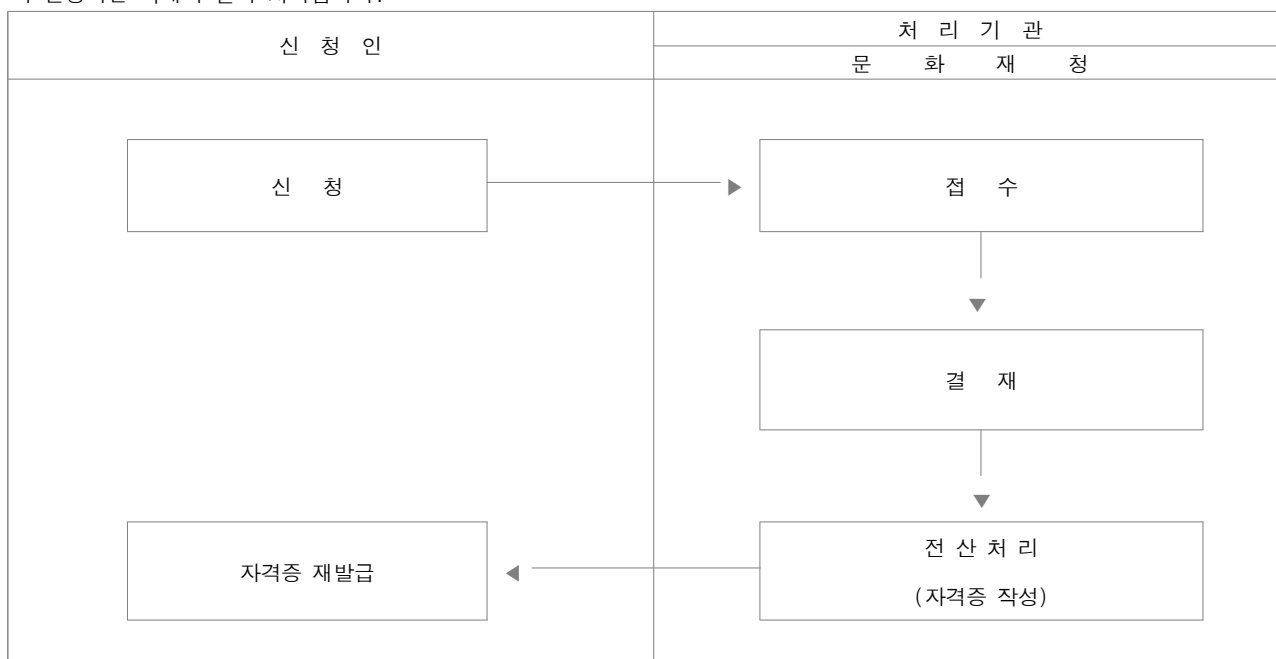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3.5cm×4.5cm) 1장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142]
[별지 제3호의2서식]

보유자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사진 (3.5cm x 4.5cm)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종목 ()무형유산 제 호 (명칭 :)			
	보유자인정일자			년 월 일
	보유자인정기관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주소			
신청자격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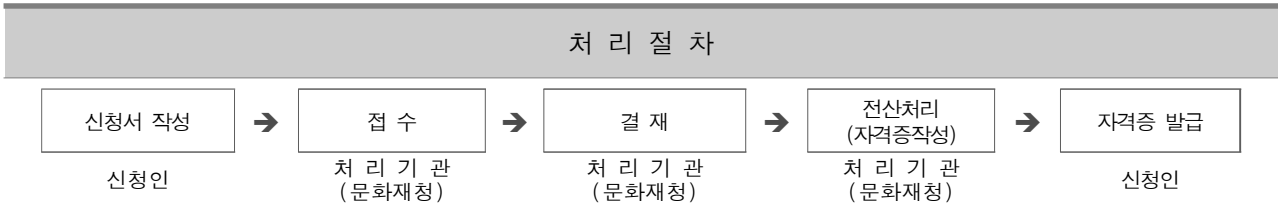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사본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3.5cm×4.5cm) 2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지 앞쪽)

(표지 뒤쪽)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문 화 재 청

76mm×115mm[고급비닐(200g/㎡)]

76mm×115mm[고급비닐(200g/㎡)]

(5쪽 중 1쪽)

(5쪽 중 2쪽)

주의사항

1.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는 주소나 소속된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하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48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취소 또는 3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76mm×115mm[백상지(150g/㎡)]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자격번호:

성 명:

자격종목:

생년월일:

주 소:

사 진
(3.5cm×4.5cm)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76mm×115mm[백상지(150g/㎡)]

행정처분사항

(5쪽 중 3쪽)

처분일	처분 근거	처분 기간	처분 내용	처분 사유	기록자

변경사항

(5쪽 중 4쪽)

구 분	변경내용	기록자	비 고

현장경력

(5쪽 중 5쪽)

국기유 산수리 명	시행청	도급자	공사 기간	기록자	비고

※ 확인 : 시행청

[별지 제5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

(앞쪽)

인 적 사 항	성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3.5cm×4.5cm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학 력	학력 구분	[]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학 [] 고등학교 [] 훈련원 [] 중학교 이하			
	최종 학교명	학교 과 년 ([] 졸업, [] 졸업예정, [] 수료, [] 재학, [] 중퇴)			
근 무 처	상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전문교육					
기간	종류	기관	수료증 번호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사항(자격취소 · 자격정지 등)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

[별지 145]
[별지 제6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일	비 고

210mm×297mm[백상지(150g/㎡)]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보유자종류 :

교육기간 : . . . ~ . . . (시간)

교육과정 : 무형유산보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위 사람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위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전 통 문 화 대 학 교 의 장

직인

[별지 147]
[별지 제6호의3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사진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생년월일			
	주소			
	①자격명(종류)			
	②자격번호			
	③자격취득일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④학력	재학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⑤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업종	국가유산수리업 등록번호
		~		
		~		
		~		
⑥교육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기관
			~	
			~	
⑦상훈 、 제재	발생 연월일	종류	상훈 、 제재 기관	근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뒤쪽)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을 인정받기 위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4서식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사진 1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

1. ①, ②, ③란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적습니다.
2. ④란 학력은 최종학력(대학 이상 모두)을 적습니다.
3. ⑥란 교육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⑦란 상훈·제제는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재사항을 적습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근무회사별)

인적사항				
소속회사	⑤회사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영업소재지	
	⑨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종류		⑩국가유산수리업등 의 등록번호	
	⑪근무기간		⑫전화번호	
현장경력1	⑬참여사업명		⑭발주자	
	⑮사업비(천원)		⑯사업구분	
	⑰사업기간		⑱참여기간	
	⑲담당업무		⑳국가유산명 및 유 형	
	㉑사업개요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현장경력2	⑬참여사업명		⑭발주자	
	⑮사업비(천원)		⑯사업구분	
	⑰사업기간		⑱참여기간	
	⑲담당업무		⑳국가유산명 및 유형	
	㉑사업개요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자격 및 근무처 등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⑤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 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⑪란의 근무기간은 소속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적으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3. ⑬란의 참여사업명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실제 참여한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4. ⑭란의 발주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기관명·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5. ⑮란의 사업비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참여한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의 완료금액(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하도급의 경우는 직접 시공한 하도급 국가유산수리분만 적습니다.
6. ⑯란의 사업구분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중 참여사업별 특성분류표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7. ⑰란의 사업기간은 착수일과 완료일의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사업기간을 적습니다.
8. ⑱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에 실제 참여한 기간(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합니다)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수일과 완료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가. 국가유산수리 또는 감리 현장에 상주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경력이 종료되었으면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9. ⑲란의 담당업무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중 참여사업 담당업무 분류표에서 해당하는 업무를 적습니다.
10. ㉔란의 사업개요는 수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며, 건조물 등을 신축, 복원 및 보수한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 주요내용 등을 적습니다.
11. 현장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현장경력2 다음에 이어서 ⑬, ⑭, ⑮, ⑯, ⑰, ⑱, ⑲, ㉔을 적습니다.
12. 경력확인서 발급 시 일련번호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별지 149]
[별지 제6호의5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종류)		자격번호		
	경력증 발급번호		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① 학력	재학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② 교육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			
		~			
		~			
	③ 상훈 、 제재	발생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④ 추가 경력	회사명	근무기간	업종	국가유산수리업 등록번호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변경된 신고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변경신고서 작성방법

1. ①란 학력은 기존 신고 외 추가되거나 변경된 학력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 교육은 기존 신고 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3. ③란 상훈、제재는 기존 신고 외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재 사항을 적습니다.
4. ④란 추가경력은 기존 신고 외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 업무에 근무하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발급한 발주자나 사용자(대표자)를 적습니다.

[별지 150]
[별지 제6호의6서식]

[] 신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 갱신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발급사유		(※갱신 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작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 ([] 신규, [] 갱신,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경력증(경력 등의 갱신이나 경력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재발급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	--	---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

문화재청장(수탁기관)

※ 유의사항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의 갱신사유 또는 재발급 사유(훼손, 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경력증명: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진

(3.5cm×4.5cm)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수탁기관의장)

직인

▲ 자격사항

자 격 명	종류	자격번호	취득 연월일

▲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졸업 연월일

▲ 경력사항

근무처	경력기간	담당업무	비 고

▲ 교육사항

기 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비 고

▲ 상훈·제재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별지 152]
[별지 제6호의8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경력등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

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앞쪽)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경력증명	발급일			
	주 소				

자격사항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졸업일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상훈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상훈 기관	근거

제재사항	자격종목	연월일	종류	제재 기관	근거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명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참여사업명	사업비	코드번호	발주자

- 해당 분야 종사기간(A=B+C) : 일
- 사무경력 수행기간(B) : 일
- 현장경력 수행기간(C) : 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수탁기관의 장)

작 인

[별지 154]
[별지 제6호의10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종류)	발급일	발급번호	발급구분	담당자확인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경력증 발급대장,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대장으로 구분 작성합니다.
 - 자격명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표기하고 괄호안의 종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를 표기합니다.
 - 발급구분은 신규, 갱신, 재발급으로 표기합니다.

[별지 155]
[별지 제7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신청 업종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현황	(번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4.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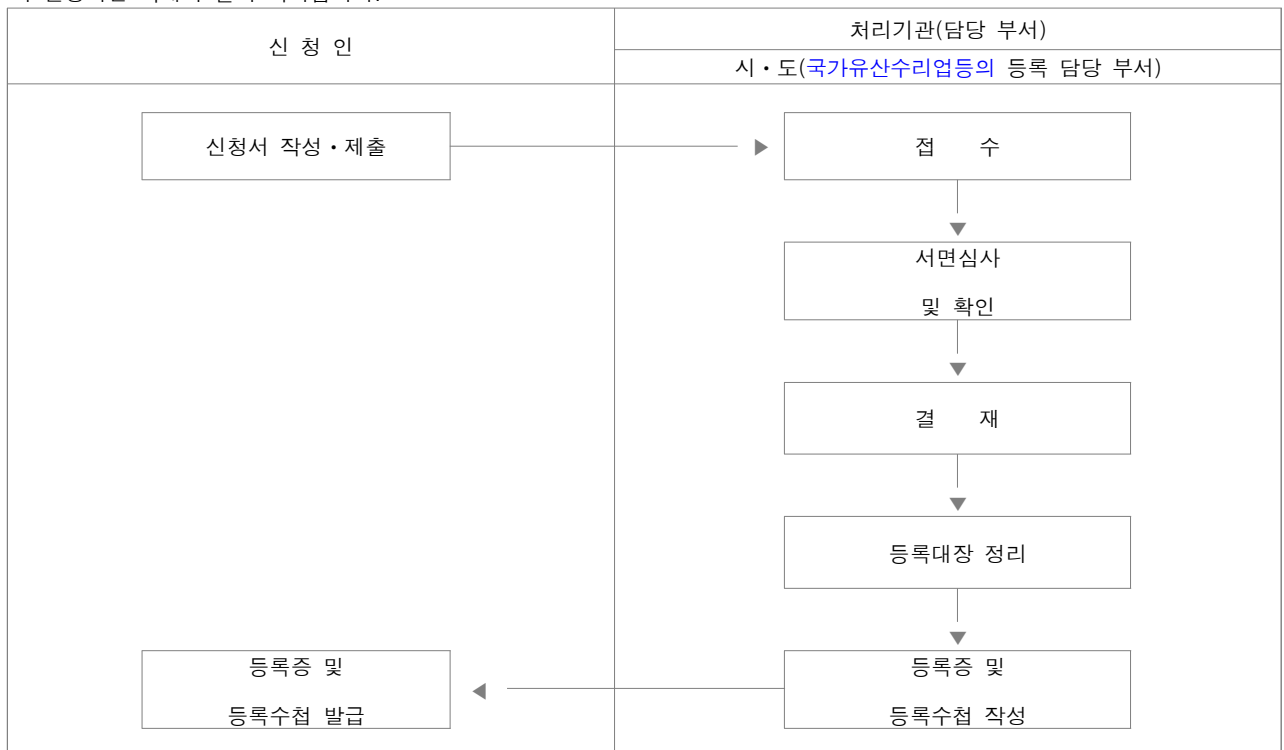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취득 연월일	성명	주소	입사일	등록일	전화 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취득 연월일	성명	주소	입사일	등록일	전화 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국가유산수리업등 종류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영 업 소 소 재 지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임박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작 인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5쪽 중 제1쪽)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국가유산수리 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 지			
법인등록 번호 (생년월일)		등록일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제2쪽부터 제4쪽까지 참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작 인

105mm×148mm[백상지(150g/㎡)]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신고 접수일	기록자	비고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신고 접수일	기록자	비고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록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기록자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유산수리능력

연도	국가유산수리의 종류	금액(천원)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별지 159]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구 분	등록(신고) 업종 및 번호		등록일 (신고일)
	건설업 등록			
	건축사 업무신고			
	기 타			
그 밖 의 사 항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성명	자격종목	자격 번호	취득 연월일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성명	자격종목	자격 번호	취득 연월일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시설(사무실) 현황									
시설명	면 적		주소				소유형태		
자본금 현황									
자산 총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부채 총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행정처분사항(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기관(처분일)		처분내용		처분사유		기록자(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일련 번호	등록일	국가유산 수리업등의 종류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수령자 (서명 또는 인)

– 316 –

[별지 161]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 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경 구분	변경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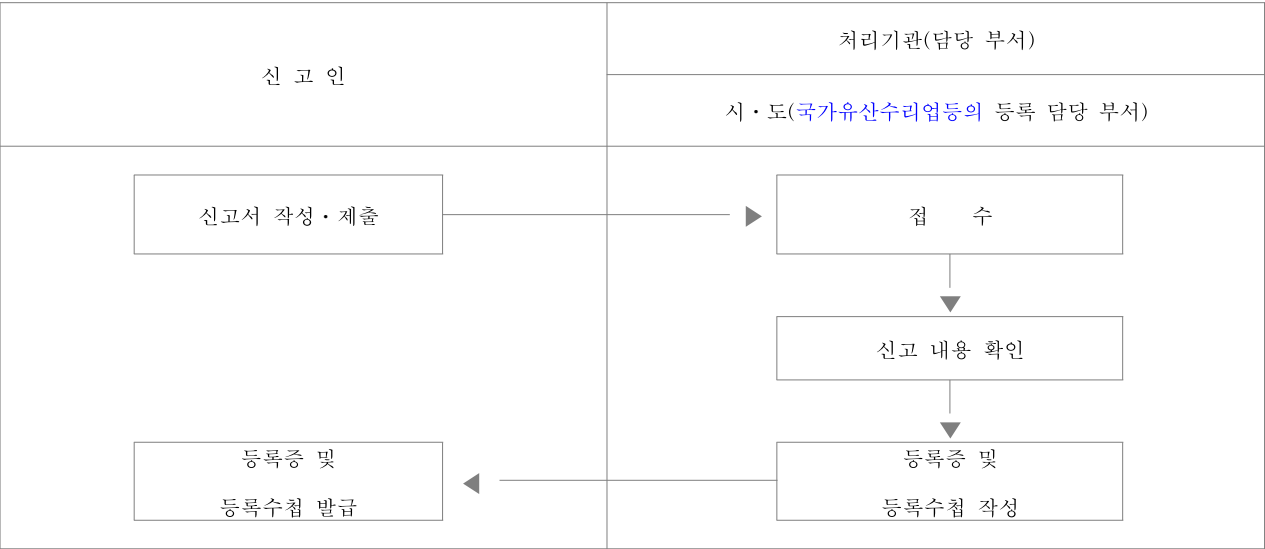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담당 공무원의 제1호·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162]
[별지 제14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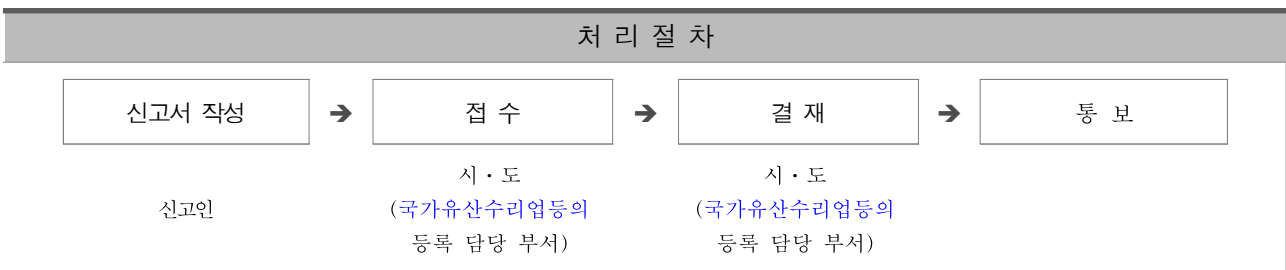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하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폐업사유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폐업 업종 외 보유 업종)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63]
[별지 제15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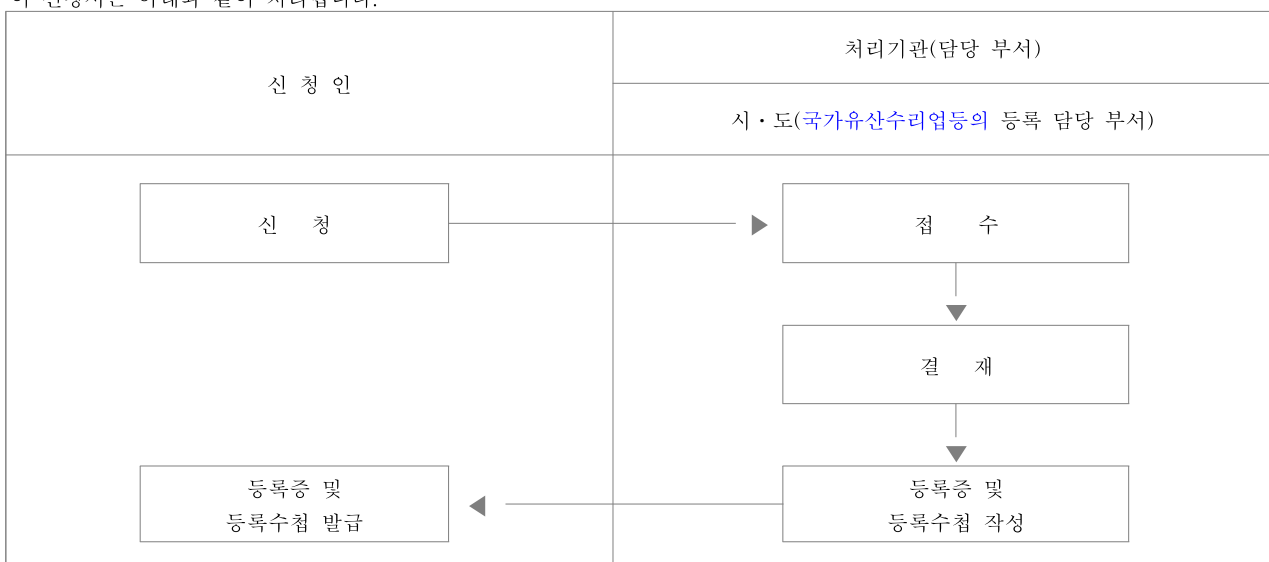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164]
[별지 제15호의2서식]

(3쪽 중 제1쪽)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년도)

본사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일련 번호	(2) 국가 유산 수리명	(3) 세부 공종	(4) 국가 유산 수리 지역	(5) 발주지명	(7) 도급 종류	(8) 발주 자	(9) 입찰 형태	(10) 계약 연월	(11) 착수 (예정) 연월	(12) 완료 (예정) 연월	(13) 당년도계약액 또는 이 월계약액 (공동도급은 지분기재)												(14) 당년도기성액												(15) 당년도발주자 공급자재액											
				(6) 하도급 국가유 산 수리는 원도 급자명 기재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관 급자재액																	
상기항목[(7) 항목제외]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기재					연	월	연	월	연	월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소 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 세부공종별(3) 부호코드			
(종 합) (전 문) 10: 보수단청 11: 단청 12: 목공사 13: 석공사 14: 번와공사 20: 조경 30: 보존과학 40: 식물보호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코드번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임시지정명승 주변정비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2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214
			단청	· 단청	115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2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2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2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131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132 232
			기타	· 벽화 등 보존처리	133 2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140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150 250
※ 건조물 구분: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유적, 발굴지, 탐방로·진입로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임시지정명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 주변정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 본사소재지 및 국가유 산수리지역(4) 부호코드	※ 도급종류(7) 부호코드	※ 발주자별(8) 부호코드	※ 입찰형태별(9) 부호코드	
21: 서울 22: 부산 23: 대구 24: 인천 25: 광주 26: 대전 27: 울산 28: 세종 31: 경기 32: 강원 33: 충북 34: 충남 35: 전북 36: 전남 37: 경북 38: 경남 39: 제주	1. 도급 2. 하도급	(자치단체) (정부기관) (민간부분) (기타) 21: 서울 41: 기획재정부 81: 종교단체 91: 공공단체 22: 부산 42: 교육부 82: 서원관리단체 92: 국영기업체 23: 대구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 향교관리단체 93: 주한외국기관 24: 인천 44: 국방부 84: 가옥관계자 25: 광주 45: 행정안전부 85: 기타 26: 대전 46: 문화체육관광부 27: 울산 47: 농림축산식품부 28: 세종 48: 산업통상자원부 31: 경기 49: 보건복지부 32: 강원 50: 환경부 33: 충북 51: 고용노동부 34: 충남 52: 국토교통부 35: 전북 53: 해양수산부 36: 전남 37: 경북 ※ 청은 소속 부처 38: 경남 명으로 기재 39: 제주	5: 일반경쟁 6: 지명경쟁 7: 제한경쟁 8: 수의계약 9: 기타	

[별지 165]
[별지 제15호의3서식]

()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일련번호:

1. 국가유산수리업자	상호	업종(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2. 국가유산수리 내역

국가유산수리 발주 구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발주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발주하는 경우				
	☐ 상기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경우(하도급받은 경우 포함)				
	☐ 자기 국가유산수리인 경우				
국가유산수리명	현장소재지				
사업개요					
세부공종내용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세부공종별상의 중분류와 보수유형 등을 기재		세부공종 부호코드	※ 별지 제15호의2서식 기재 방법 참조	
발 주 자		원도급자		등록번호	
계 약 일		착 수 일		완료(예정)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수의계약 ☐ 기타				
도급종류	☐ 원도급 ☐ 하도급				

3. 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총 도급계약액		지난 연도까지의 기성액 누계		지난 연도 이월액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 (원도급자가 기재)		미기성액	
관급 자재액		다른 종류 포함 기성액		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	

4. 그 밖의 사항(규모, 공동도급내역 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발 주 자
(수급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담 당 자:

(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167]
[별지 제16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양수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국가유산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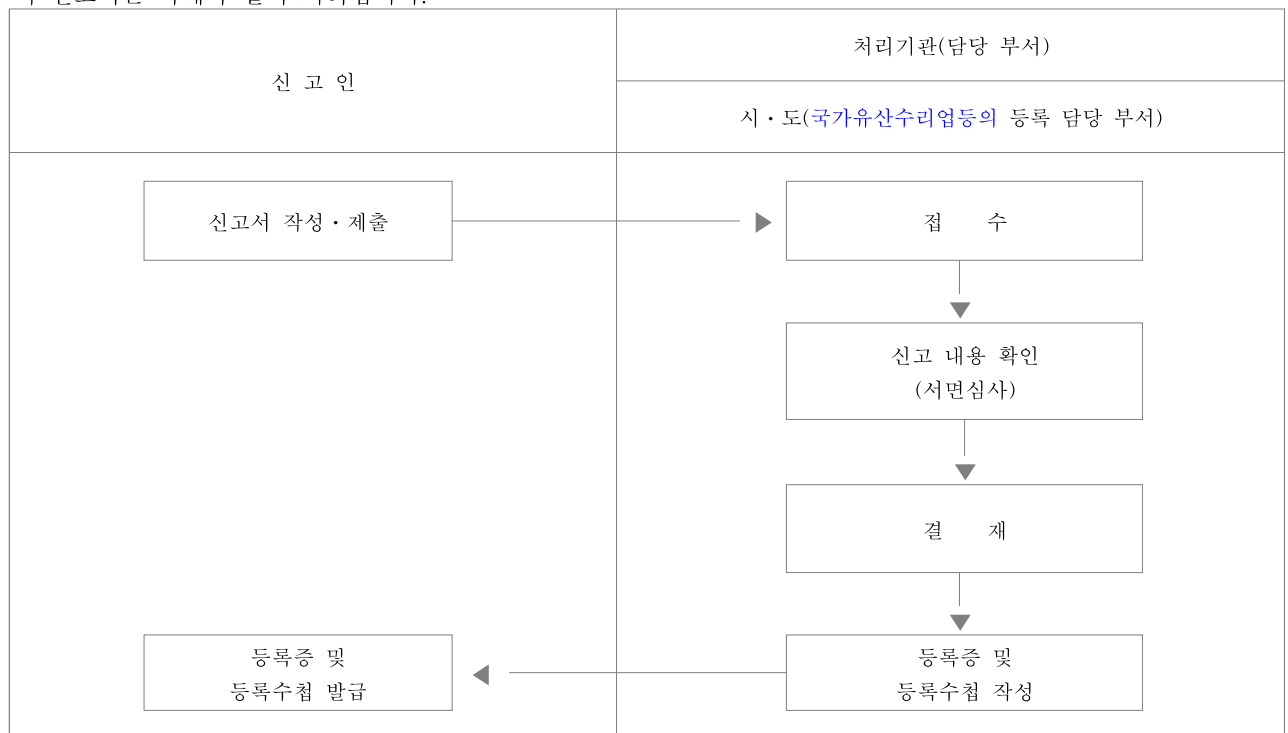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168]
[별지 제17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법인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국가유산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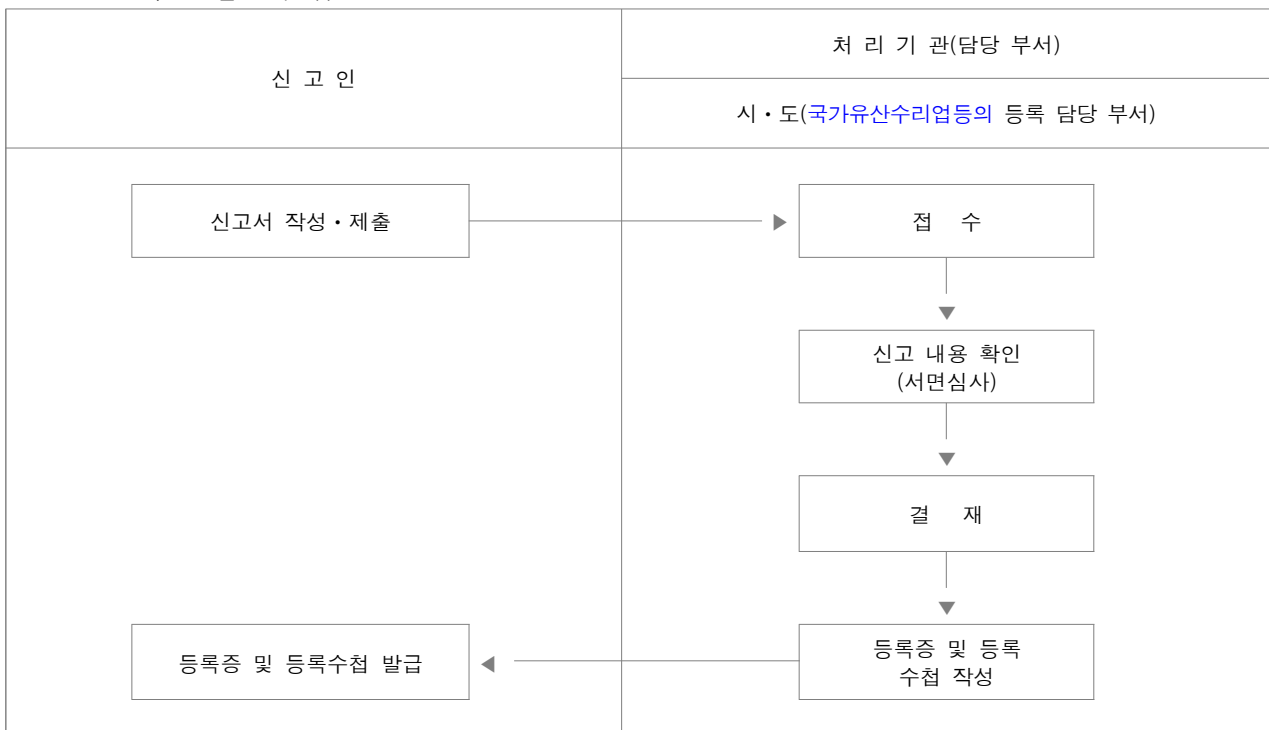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169]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국가유산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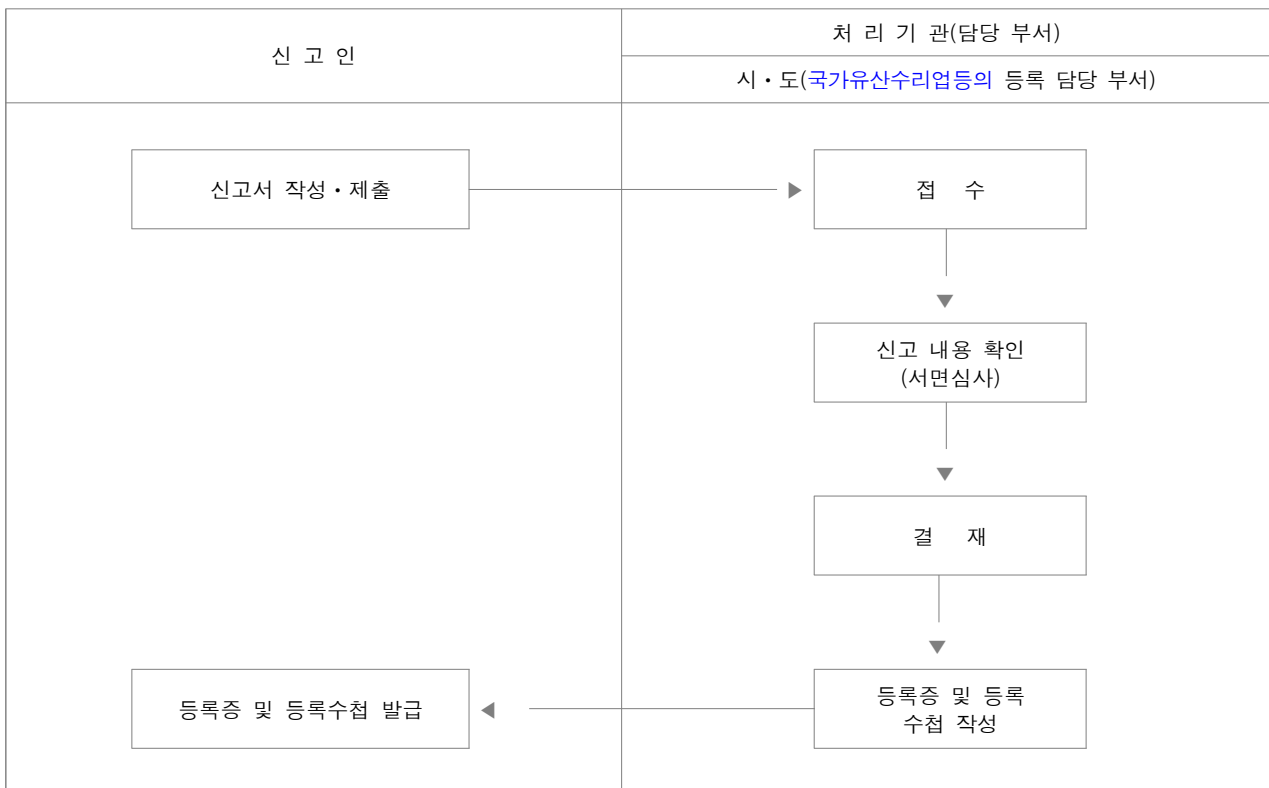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1. 공사 개요									
공 사 명									
국가유산명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국가유산수리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하자보수 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이행, 지체, 위약, 기타 손해배상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기성금		지급 횟수		준공금			
				지급 조건					
발주자의 지급재료		품명		수량		품명		수량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주소			
		상호		대표자		주소			
3.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계약 내용			변경 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 업종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1차	
								2차	

4. 국가유산수리 참여자 현황

현 장 대리인	구분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성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성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간	담당 업무 내용

5. 국가유산수리의 진척 및 국가유산수리 대금의 수령 현황

구분	업체	회차	검사일	수령일	수령금액	수령금액 누계	잔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율)							
기성금 (기성율)							
준공금							

6. 사후관리

하자발생 연월일	하자보수 완료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실측설계 도급 대장

1. 설 계 개 요						
설 계 명						
국가유산명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설계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3. 실측설계 참여자 현황						
성 명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간	담당 업무 내용		
4. 그 밖의 사항						
○ 해당 국가유산의 실측설계 시 특이사항을 기록 (원형 고증, 주요 전통기법조사 내용 등)						

감리 도급 대장

1. 감리 개요						
감리명						
국가유산명				소재지		
발주자	상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감리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3. 국가유산수리 내용						
상호(명칭)		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도급금액		공사기간		변경금액 (1차)	변경금액 (2차)	
4. 감리 참여자 현황						
성명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간	담당 업무 내용		
5. 시정 및 통보사항						
일련번호	시정일	시정 및 통보사항				

하도급통보서

문 화 재 수 리 명					
수급인	상 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 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도급 내용	공사명		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하도급	공 종		하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하도급 사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의 하도급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규모·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74]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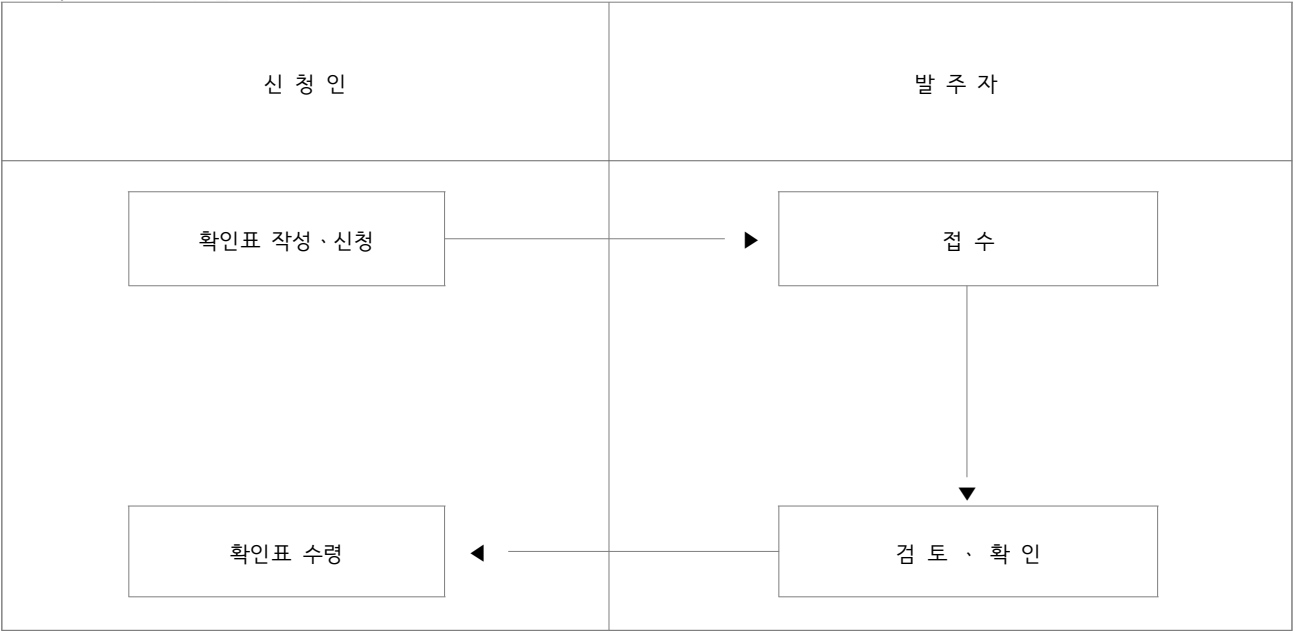
유의사항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175]
[별지 제23호의2서식]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국가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용		
	사유		
사업개요	착수에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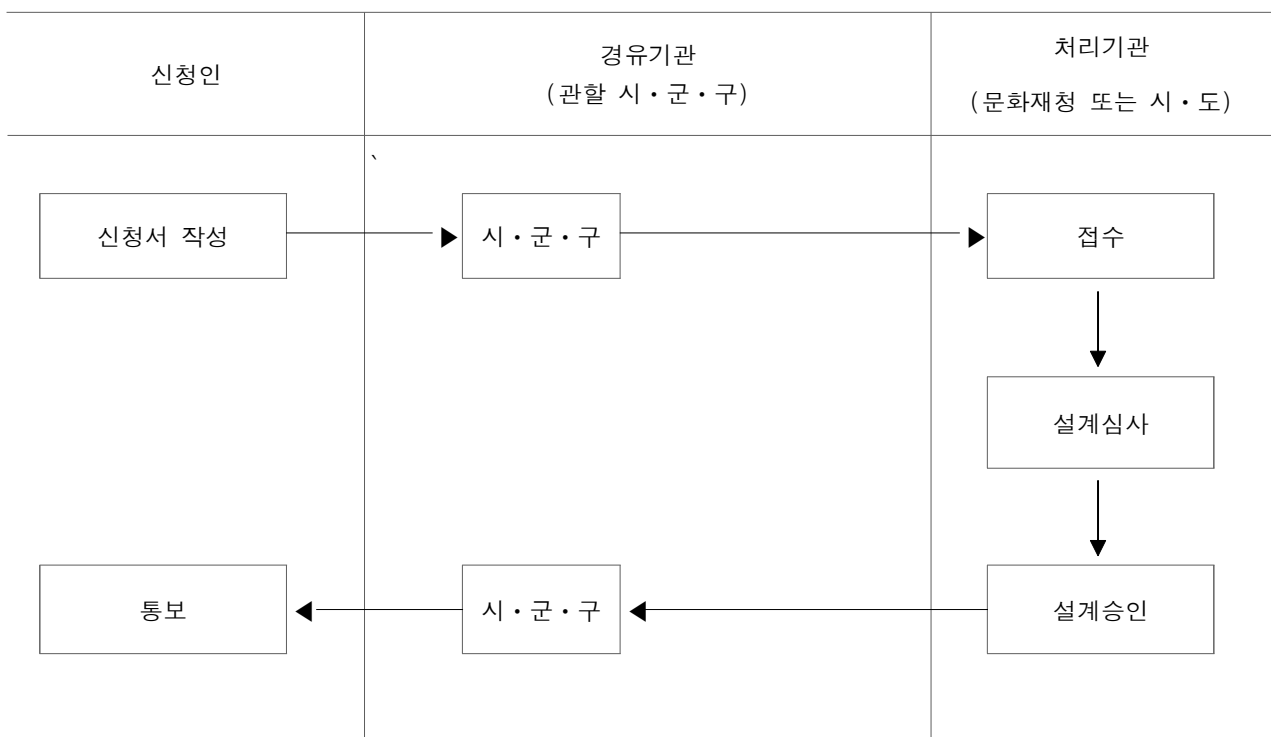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수 수 료 없 음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별지 176]
[별지 제23호의3서식]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대상 국가유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승인내용	
	승인조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행정사항

1. 이 승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국가유산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177]
[별지 제23호의4서식]

국가유산수리 ([]착수 []완료)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발 주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 국가유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수리명		
	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설계승인번호		설계승인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 개요	국가유산수리 ※ 난이 부족할 경우 에는 추가하여 적 습니다.	상호(대표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국가유산감리원
	감리	구분 []책임감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의 []착수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178]
[별지 제23호의5서식]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 국가유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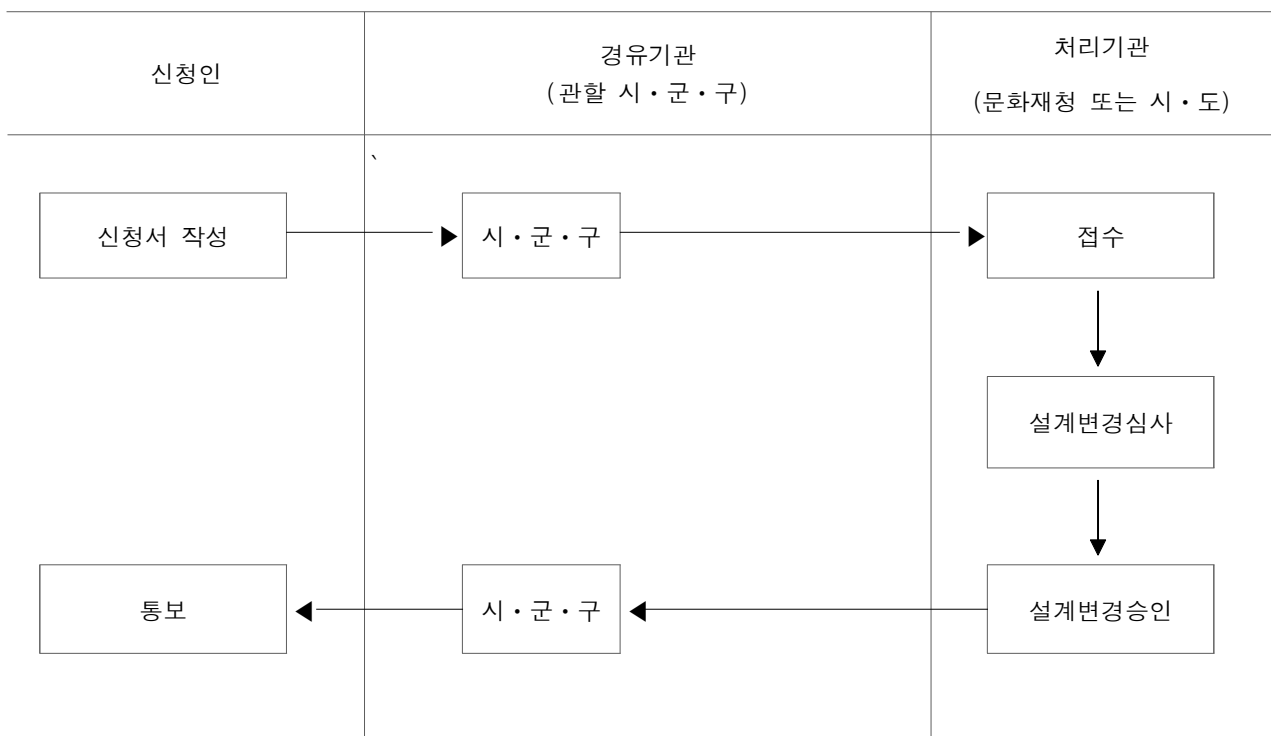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수 수 료 없 음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179]
[별지 제23호의6서식]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

(앞쪽)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 소	
대상 국가유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당초승인내용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변경승인내용	
	승인조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행정사항

1. 이 승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설계 변경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국가유산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180]
[별지 제23호의7서식]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천원)	감리의 구분	발주자명	확인 연월일	확인 (발주자)
1							
2							
3							
4							
5							
6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	---

210mm×297mm[백상지(150g/㎡)]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은 도급받은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예정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4. 감리의 구분은 책임감리, 일반감리([상주국가유산감리원](#)), 일반감리([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중 해당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181]
[별지 제24호서식]

감리일지								
공 사 명			연 월 일 (요일)			날씨		누계 공정
주 요 작 업 상 황	공 종	단 위	설 계 량	당 일		누 계 작 업 량	공 정 (%)	특 이 사 항
				작 업 위 치	작 업 량			
국가유산 감 리 원 업 무 수 행 내 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지 시 사 항
관 련 문 서	업 무 분 류	문 서 분 류	공 종 구 분	위 치		제 목 (내 용 요 약)		
특 이 사 항								

작성요령	
1. 국가유산감리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공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 · 서명하여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 주요 작업 상황은 공사 추진 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교육과정 :

교육종류 :

교육기간 : 20 . . . ~ 20 . . . (시간)

위 사람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의 전문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직인

[별지 183]
[별지 제26호서식]

발주자 :

평가자 :

(서명 또는 인)

(앞쪽)

국가유산수리 평가표							
국가유산수리명		국가유산수리업자	대표자: , 면허번호:				
수리 개요		소재지					
		수리금액			공사기간		
		현공정			평가연월일		
구분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현황조사	○ 국가유산수리 전 사전조사 및 국가유산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국가유산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국가유산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10					
2. 시공관리	○ 국가유산수리 계획의 수립·실시 ○ 국가유산수리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15					
4. 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안전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10					
6. 현장관리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작성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합 계							

210mm×297mm[백상지(120g/m²) 또는 백상지(80g/m²)]

◎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평 점				

비 고

1. 발주기관의 장은 문화재수리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문화재수리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합니다.

발주자: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앞쪽)

실측설계 평가표							
실측설계명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대표자)					
실측설계 개요		실측설계 내용					
착 공		실측설계금액					
준 공		평가 연월일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기본조사	○ 국가유산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0					
2. 실측조사	○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5					
3. 내역산출	○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 단위 수량당 단가의 적정 여부 ○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20					
4. 도서작성	○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책임기술자 등 설계관련자의 서명·날인 여부 ○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25					
5. 기 타	○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여부 ○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10					
합 계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평 점				

비 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실측설계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합니다.

[별지 186]
[별지 제30호서식]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1. 지정 현황							
우수 국가유산 수리업자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2. 국가유산수리업자 순위표							
순위	국가유산 수리업자명	대 표 자	국가유산수리명	국가유산수리 금액	국가유산수리 기간	평점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여부
3.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별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명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사 실 확인기관		사 실 여 부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 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1. 지정 현황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순위표							
순위	국가유산실 측설계업자명	대표자	실측설계명	실측설계 금액	실측설계 기간	평점	우수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자 지정 여부
3.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별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명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사 실 확인기관	사 실 여 부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 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 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 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지 188]
[별지 제3호서식]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번호		
허가(변경허가)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허가(변경허가) 대상		위치(지번)
허가 내용	구분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등 []택지의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토석류의 채취 등 []도로의 신설 및 포장 등 []그 밖의 행위()
	상세내용	
	허가(변경 허가)기간	
허가(변경허가) 조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를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행정사항

1. 이 허가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허가권자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u>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u>」(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업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u>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u>에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u>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u>에 배치할	<u>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u>」----- ----- -----.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u>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u>」----- ----- ----- ----- ----- ----- ----- <u>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u>----- ----- ----- ----- ----- ----- ----- <u>동산문화유산</u> -----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항제2호 -----
---- 문화유산인 -----

-----.

② (현행과 같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u>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 --.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매장유산이 ----- --- “매장유산” ----- ----- ----- ----- -----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상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2. 삭제
3.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② ----- 매장유산
산 지표조사-----

--- 매장유산의 -----

--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

----- 매장유산
산 유존지역 정보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① -----

----- 국가유산 -----

1. ----- 국가유산-----

3. -----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

-----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 매장유산 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사기관-----

----- 매장유산의 -----

4. 매장유산 -----

가. -----
----- 매장유산 유존지역 -----
---- 매장유산을 -----

나. -----
----- 매장유산 유존지역 -----
----- 매장유산을 -----

다. -----
----- 매장유산 유존지역 -----

----- 매장유산 발굴조사 -----

---- 매장유산의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
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가. (생략)

나.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
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
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
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
의 토지(임야) 조서

② -----
----- 국가유산 -----

-----.

1. 2. (현행과 같음)

3. 매장유산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매장유산 -----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① --

매장유산의 -----

----- 매장유
산 발굴(현상변경)허가-----

-----.

1. (현행과 같음)

2. ----- 매장유산

3. (생략)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3. (현행과 같음)

② ----- 매장유산 발굴의 -----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 -----

-----.

1. ----- 매장유산 -----

--
2. ----- 매장유산 발굴 --

----- 매장유산 관리 -----
--
3. -----
-- 매장유산 -----

--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② (생 략)

제7조의2(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 등)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3. (생 략)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생 략)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4. -----
매장유산 -----

5. -----
매장유산 발굴 -----
----- 매장유산 세척 -----

6. -----
----- 매장유산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매장유산 -----

-----.

1. (현행과 같음)
2. ---- 매장유산 -----
--
3. (현행과 같음)

제8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현행과 같음)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

-- 매장유산 -----
-----.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사진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② -----

-----.

1. ----- 매장유산 -----
2. ----- 매장유산-----
--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
----- 국가유산의 -----

-----.

제13조(매장유산의 공고) ① -----

----- 매장유산-----

-----.

② (현행과 같음)

③ -----

매장유산 -----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제5조에 따른 <u>문화재</u>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년 1월 1일	1. ----- <u>국가유산</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u>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u>) ① 문화재청장은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u>무형문화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u>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u> 및 법 제17조에 따른 <u>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u>,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u>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u>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 ----- ----- --. 제2조(<u>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u>) ① -----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 <u>무형유산위원회</u>----- ----- ----- <u>국가무형유산의 지정</u> ----- <u>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u>----- -----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u>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u>

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
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
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
에 따른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
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
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
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
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
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
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해
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
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
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
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 무형유산의 보고) -----

-- 국가무형유산으로-----
----- 무형
유산이 -----
----- 무형유산-----

-----.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
차) ① -----
-----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국가
무형유산등”-----
----- 국가무형유산 -----

----- 무형유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
문화재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
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들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증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 국가무형

유산등-----

-----.

제6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서 등의 반납)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

--(국가무형유산--

-----.

제7조(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
----- 국가무형유
산등-----

----- 무형유산 -----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문화재청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무형유산등 -----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

----- 국가무형유산 -----

-----.

② 국가무형유산 -----

-----.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⑤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

-----.

제10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무형유산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무형유산 -----

-----.

⑤ ----- 국가무형유산 -----

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⑥·⑦ (생략)

제11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② (생략)

제12조(무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 ①·②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
----- 국가무형유산-----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무형유산 대장) ① -----

-- 국가무형유산 -----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무형유산대장”-----

---. ----- 국가무형유산등-----

-----.

② 무형유산대장-----

-----.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② (현행과 같음)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토의견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검토의견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수 있다.

1. ~ 4. (생략)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 6. (생략)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 ④ (생략)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1. -----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

2. -----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

3. -----
----- 문화유산 -----

4. 문화유산 -----

5. · 6. (현행과 같음)

7. ----- 문화유산 관련 -----

----- 문화유산에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
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
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 4. (생략)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
학금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
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
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
거나 받으려는 사람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
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
하려는 사람

②·③ (생략)

-----.

1. -----
-- 지정문화유산이 -----
----- 지정문화유산
경관-----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
----- 문화유산의

-----.

1. 문화유산-----

2. -----
문화유산-----

--

3. -----
-- 문화유산-----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의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생략)
4.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 ② (생략)

제7조의2(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 및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

-----.

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
--
2. ----- 문화유산교육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유산교육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① ----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
지 제3호의5서식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
은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 받은 자는 해당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에 별표 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6
제3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
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
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교육 프
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문
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
는 자는 해당 문화재와 별지 제
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문
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8
제2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증하

----- 문화유산교
육 프로그램 -----

----- 문화유산교
육 프로그램 인증서-----

④ ----- 문화유
산교육 -----

⑤ ----- 문화유산교육 ---

⑥ ----- 문화유산교육 -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① ---
----- 지정문화
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
----- 문화유산과 -----

② ----- 문화유산을 -----

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명칭·수량·크기 및 사진 등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8 제2항에 따라 수증하기로 결정한 문화재(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 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영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 문
화유산의 -----

-----.

③ -----

-- 문화유산-----

-----.

제8조(조사보고서) -----
----- 국가
지정문화유산-----

--. -----
----- 국보·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
-----.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

----- 문화유산 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생략)
2. 관계전문가의 조사 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
5.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문화재 사진자료
7.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

- -----

--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

-----.
1. (현행과 같음)
 2. -----
---- 문화유산위원회-----

 3. 문화유산-----

 4. 문화유산 ----
 5. 문화유산-----
--
 6. 문화유산 ----
 7. 문화유산-----

 8. 법 제13조제1항-----

----- 문화유산의 -----

 9. 문화유산 -----

10. (생략)

11.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2.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
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
보·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재에 한정한다)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야 한다.

1. ~ 6. (생략)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
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
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
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
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
(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10. (현행과 같음)

11. -- 문화유산 -----

12. -----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

--- 국가민속문화유산-----

-----.

1. ~ 6.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민
속문화유산-----
-----.

③ -----

-----.

-----.

1. -----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생략)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

----- 국가민속문화유산-----

-----.

2. -----

----- 국가민속문화유산-----

-----.

④ -----

문화유산의 -----

-----.

⑤ -----
국가민속문화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

----- 문화유산위원회-----

----- 문화유산에 -

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2. 3. 삭 제

4. (생 략)

② 삭 제

③ (생 략)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

1. ----- 국가 지정문화유산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문화유산위원회-----

-----.

⑤ -----

문화유산위원회-----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

----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

체 지정서를 -----

----- 국가지정문

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

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 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허가신청서) ① -----

--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지정문화유산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
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명승이나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구역 등에서 동
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
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
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
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생 략)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
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
정하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
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
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국가지정문화유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삭 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

-----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 국외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 국외 -----

③ ----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

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반출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2.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
도 및 기간

3. ~ 5. (생략)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

산

1. ~ 3. (현행과 같음)

④

보물 또는 국가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

국외

⑤ _____

1. --- 문화유산-----

2. --- 문화유산-----

3. ~ 5. (현행과 같음)

6. _____
_____ 문화유산 _____

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 (생 략)

⑥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천연 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2. 현상변경(표본·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 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⑧ 등록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① -----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② -----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③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
----- 국가지정문화유
산의 소재지 -----

-----.

④ -----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⑤ -----

--- 국가지정문화유산 -----

-----.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반출했던 문화재를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35호의2서식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출했던 문화재를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⑦ 법 제40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⑧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부검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⑨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 및 영 제2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서)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대

⑥ -----
----- 국가지정문화유산

-----.

1. -----
----- 문화유산을 -----

2. -----
-- 문화유산을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장)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수입·반입 신고대장을 작
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수입·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
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
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
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
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
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
재의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
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
지) -----

----- 문화
유산의 -----

-----.

제2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①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시 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 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국가지정문화유산에 -----

② ----- 국가지정문화유산 -----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

③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 국가지정문화유산과 -----

④ ----- 임시 지정문화유산-----
-----.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 국가 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 기록) ① -----

--.

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
는 국가지정문화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
재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
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
정문화재

4. 천연기념물 및 명승

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
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
가지정문화재

② (생 략)

제29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
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
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

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
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해야 한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

1. -----
-- 국가지정문화유산

2. -----
----- 국가지정문화
유산

3. -----
----- 국가지
정문화유산

<삭 제>

5. -----
----- 국
가지정문화유산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
표) -----

문화유산조사원-----
-----.

제30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
----- 국가지
정문화유산-----

-----.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3. ~ 6. (생략)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
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
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
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
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
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3. (생략)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
거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
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
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

1. --- 국가지정문화유산-----

2. --- 문화유산이 -----
--

3. ~ 6. (현행과 같음)

② -----

----- 문화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③ -----
----- 국가지정문화유산 ---

-----.

1. --- 국가지정문화유산-----

2.·3. (현행과 같음)

④ -----

----- 국가
지정문화유산-----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
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

1. 문화유산 -----

2. 문화유산 -----

3. _____
문화유산의 _____

② -----

----- 국가지정문화유산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생략)

3.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4.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제33조(보조금) ① ~ 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 ---

----- 국가지정문화유산을 -----

-----.

1. 2. (현행과 같음)

3. --- 문화유산이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문화유산 -----
-----.

제33조(보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문화유산의 -----

-----.

제3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
록기준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문화유산 -----

-----.

----- 국가등록문화유산로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

--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

----- 문화유산에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
----- 문화유산위원회-----
-----.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35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문화재의 사진, 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⑤ -----

문화유산위원회----- 국
가등록문화유산 -----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① -----
----- 문화유산의 소
유자----- 문화유
산의 소재지-----
----- 문화유산을 국
가등록문화유산으로 -----
-----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신청서-----

-----.

----- 문화유산-----

-----.

1. --- 문화유산 -----

2. --- 문화유산-----

3. -----

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
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
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관계전문가의 조사 의견 및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③ (생략)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
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
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
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
70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대
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
한다)을 비치하고 국가등록문화
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
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 문화유산-----

4. --- 문화유산-----

② -----

1. (현행과 같음)

2. -----
시·도문화유산위원회-----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등록 사항 등) -----

----- “국가등록문화
유산관리단체”-----

-----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 국가등록문화
유산에 -----

한다.

제37조(기술 지도) ① 법 제54조 제3항에서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8조(국가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34

---.

제37조(기술 지도) ① -----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

②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
----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

국가등록문화유산 기술 -----

-----.

제3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

-----.

1. ~ 3. (현행과 같음)
4. ----- 국가등록문화유산 -----

호서식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국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
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
35호서식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국가
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제39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
경 신고 등) ① 삭 제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는 별지 제72호서식의 국가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
다.

③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
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
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⑤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
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
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5. ----- 국가
등록문화유산 -----

6. ----- 국가
등록문화유산 -----

제3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등)

② ----- 국가등록
문화유산 -----

--.

③ ----- 국가등록문화유산-----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국가
등록문화유산 -----

-----.

제40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허가대상 통보) -----

따른 건축허가·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41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1조의2(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국가등록문
화유산의 -----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

-----.

제4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증 교부 등)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
-----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제41조의2(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① -----
----- 국가등
록문화유산-----

----- 문화유산에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②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문화유산위원회 -----

---.

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① -----

--- 일반동산문화유산 -----

----- 문화유산 국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일반동산문화유산 -----
----- 문화유산 국외 -----
-----.

③ -----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
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의 신청
을 받아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2개
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
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
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 문화유산 반출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일반동산문화유산-----

----- 문화유산
국외 -----
-----.

⑤ -----
일반동산문화유산-----

----- 문화유산 국외 -----

-----.

1. (생략)

2. 문화재 반출국가 인증서

3. ~ 6. (생략)

⑥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반출했던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재 국내 반입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2.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 5. (생략)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 -----

3. ~ 6. (현행과 같음)

⑥ -----
----- 일반동산문화유산-----

----- 문화유산 국외 --

-----.

⑦ -----
--- 일반동산문화유산-----

----- 문화유산 국내

-----.

⑧ -----

--.

1. --- 문화유산-----

2. --- 문화유산-----

3. ~ 5. (현행과 같음)

6. -----
----- 문화유산 --

7. (생 략)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2.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정위원(이하 “문화재감정위원”이라 한다)의 주관 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평가할 것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감정위원이 같은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할 것

제47조(수당의 지급) 문화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국

7. (현행과 같음)

제45조(감정 요령) -----

-----.

1. -----
----- 일반동산문화유산

2. -----
문화유산감정위원(이하 “문화유산감정위원”-----

3. -----
----- 문화유산감정위원-----

제47조(수당의 지급) -----
----- 문화유산감정위원-----

-----.

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 ① --
-----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
----- 비문화유산으로 -----

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비문화재 국외반출 확인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 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8호의2서식의 비문화재 국외반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79호의 2서식의 문화재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

② ----- 일반동산 문화유산이 ----- 비문화유산 -----

----- 비문화유산 -----

④ ----- 문화유산감정대장 -----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 일반동산문화유산을 -----

제51조(시·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
해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
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지
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
소

다. ~ 사. (생 략)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
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
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
소

다. (생 략)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보고

가. (생 략)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
소

다. ~ 바. (생 략)

1. -----
-----.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
유산자료-----

가. 문화유산-----

나. 문화유산-----

다. ~ 사. (현행과 같음)

2. -----

시·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
유산자료-----

가. 문화유산-----

나. 문화유산-----

다. (현행과 같음)

3. -----

시·도등록문화유산-----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유산-----

다. ~ 바. (현행과 같음)

4.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말
소에 관한 보고

가. (생략)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
소

다. (생략)

5.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
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및
수량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
소

다. ~ 마. (생략)

6.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
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
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
소

4. -----
시·도등록문화유산-----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유산-----

-

다. (현행과 같음)

5. -----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
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
유산-----

가. 문화유산-----

나. 문화유산-----

-

다. ~ 마. (현행과 같음)

6. -----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
산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
유산-----

가. 문화유산-----

나. 문화유산-----

-

다. ~ 마. (생략)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생략)

제52조의2(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전

다. ~ 마. (현행과 같음)

제52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

-----.

② -----
----- 문화유산매매업 -----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① -----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
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
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
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제52조의3(문화재매매업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75조의2제2
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

1. 문화유산매매업 ---

2. (현행과 같음)

② -----

----- 문화유산매매업 변
경신고서-----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

제52조의3(문화유산매매업의 지
위승계 신고) ① -----
----- 문화유산매매업의 --

----- 문화유산매매
업 지위승계 -----

-----.

1. 문화유산매매업 ---

2. (생 략)

3.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재매매
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83
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
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
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
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 3. (생 략)

4. 법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
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
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사학·

2. (현행과 같음)

3. 문화유산매매업-----

4. -----

----- 문화유산매매
업-----

② -----

----- 문화유산매매업의 --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
장-----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문화유산매매
업 -----

② -----

고고학 · 인류학 · 미술사학 · 민속학 · 서지학 · 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55조(문화재 매매 · 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 · 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 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 문화유산관리학 -----

--.

제55조(문화유산 매매 · 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
----- 문화유산 매매 · 교환
----- “문화유산매매장부”-----
-----.

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장부-----

-----.

③ -----

----- 문화유산매매장부 -----

-----.

④ 문화유산매매업자-----

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56조(폐업신고) 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

----- 문
화유산매매장부에 -----

 -- 문화유산매매장부를 -----
 -----.

제56조(폐업신고) ① -----
 --- 문화유산매매업의 -----

 ---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서-----

 -----.

1. 문화유산매매업 ---
2. -----
 -- 문화유산매매장부

② -----

 -- 문화유산매매업 -----

 -----.

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생략)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재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사업계획서

2. (생략)

② 영 제41조의5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88호의3서식에 따른다.

-----.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문화유산매매업 -----

-----.

제58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

-----.

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

2. (현행과 같음)

②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
-----.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돌봄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행정
2. 문화재의 모니터링 방법
3. 문화재의 일상적인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4.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 ⑧ (생략)

⑨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생략)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문화재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

-----.

1. -----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
--
2. 문화유산-----
3. 문화유산-----

--
4. ----- 문화유산돌봄사업--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

⑩ (현행과 같음)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

청장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②·③ (생략)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재의 확인: 2018년 1월 1일
2.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
----- 문화유산이 -----

--(문화유산-----

제63조(규제의 재검토) -----

-----.

1. ----- 비문화유산-----

2. ----- 문화유산 -----

· 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
인 등: 2018년 1월 1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① (생략)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략)

③ ~ ⑥ (생략)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문화재수리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② ----- 국가유산수리

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 (생 략)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의 발급 등) ① 삭 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
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
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
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
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
험 및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
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
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
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기술자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증의 발급 등)

② ----- 국가
유산수리기술자 -----
-----.

③ -----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
급대장-----.

④ ----- 국가
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증 재발급신청서-----

-----.

1. 2.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①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② ----- 국가유산수
리기능자 -----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 (생략)

제5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3(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생략)

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단에 따라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 ----

2.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3.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

----- 국가유산수리 -----.

제5조의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현행과 같음)

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3. ~ 5. (생략)
6.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

-----.

1. -----
----- 국
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

--.

2.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3.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유산수리 -----

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
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제1
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
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
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문화
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
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갱신 또는 재발
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
력증 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
7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
술자등 경력증을 발급받은 문화
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에 관
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국
가유산수리기술자등-----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
력증 -----
-----.

④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⑤ ----- 국가유산수리
기술자등 경력증----- 국가
유산수리기술자등은 -----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 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

⑥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⑦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⑧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생략)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한다) 3. 별지 제8호서식의 <u>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u> 4. <u>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u> 5. (생략)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7.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u>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한다</u>) ②·③ (생략)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u>----- 3. ----- <u>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u> ----- 4. <u>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u> ----- 5. (현행과 같음) 6. ----- ----- --<u>국가유산실측설계업</u>----- -- 7. ----- ----- -----<u>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u>-----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 -----
--	---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 3. (생략)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변경신고 등) ① -----

----- 국가유산수리업등-----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

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
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
격증

②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
다.

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
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
수리업자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
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야 한다.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
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
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유산수리기능자 -----

가. (현행과 같음)

나. ----- 국가유
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

다. ----- 국가유산수리기술
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② 국가유산수리업등-----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국가유산수리
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
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
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업등-----

-----.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
신고서 및 첨부서류)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

폐업신고서-----

-----.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

----- 국가유산수리업등 -----

-----.

제10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

----- 국가유산수리 능력-----

----- 국가유산수리업자-----

-----.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문화재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자

2.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

-----.

②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 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

1. -----
----- 국가유산수리업-----

2. -----
----- 국가유산수리업 -----

③ -----

-----.

-----.

1. 국가유산수리 -----

가. -----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문화재 수리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다음의 서류 전부

- 1)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다만,

-----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

나. -----

-----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

다. -----

----- 국가유산수리 -----

- 1) 국가유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

<u>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u> 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u>문화재수리의</u> 도급계약 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 본을 말한다.	----- ----- ----- <u>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u> <u>서</u>----- ----- <u>국가유산수리</u> <u>의</u> -----.
2) 해당 <u>문화재수리</u>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제49조에 따른 세금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 행규칙」 제100조제30호 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 --- <u>국가유산수리</u>----- ----- ----- ----- ----- ----- -----
3) 해당 <u>문화재수리</u>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서류	3) --- <u>국가유산수리</u>----- ----- ----- -----
2. (생 략) 3.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u>문화</u> <u>재수리기술자등</u> 보유현황표	2. (현행과 같음) 3. ----- <u>국가</u> <u>유산수리기술자등</u> -----
4. (생 략) 제10조의3(<u>문화재수리 능력의 평</u> <u>가 방법</u>)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에 따른 <u>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u> <u>재수리</u> 능력 평가는 별표 1의2 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한 다.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u>국가유산수리 능력의</u> <u>평가 방법</u>) ① ----- ----- <u>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u> <u>가유산수리</u> ----- ----- --.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문화재수리 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 실적에 합산한다.

⑤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

② -----
국가유산수리업-----
----- 국가유산수리 능력-----

---. --- 국가유산수리업-----

-----.

③ -----

----- 국가유산수리 능력-----

--- 국가유산수리 능력과 ---
----- 국가유산수리업자-----

-----.

④ ----- 국가유산수리 능력-----

----- 국가유산수리 실적은 ---

----- 국가유산수리 실적에 -----.

⑤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실적도 해당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 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결과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수리 실적도 -----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의 -----

-----.

⑥ -----

----- 국가유산수리 -----

-----.

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① -----

----- 국가유산수리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수리 -----

② -----

국가유산수리 능력-----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

템-----.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법 제56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 6. (생략)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의 양도·합병 신고에 관한 업무
9.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한 업무

제10조의5(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

---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3. ----- 국가유산수리업자등-----
--
4. ~ 6. (현행과 같음)
7. ----- 국가유산수리 -----

8. -----
국가유산수리업·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

9. -----
국가유산수리업·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

10. (생 략)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법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 취소·정지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취소·영업정지

9.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10.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

1. ~ 6. (현행과 같음)

7.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8. ----- 국가
유산수리업자등-----

9.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
----- 국가유산수리
업등 -----

-----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

-----.

② ----- 국가유산수리
업등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생략)

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생략)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생략)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법

-----.

1. (현행과 같음)

2. -----
----- 국가유산수리업등-----

3. ----- 국가유산수리업등-----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산수리등 -----

----- 국가유산수리등이 -----

6. (현행과 같음)

③ 국가유산수리업등-----

-----.

④ ----- 국가유산수리업등-----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

1. 양도하려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2. ~ 4. (생략)

⑤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⑥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문화재수리

----- 국가유산수리협회

-----.

1. ----- 국가유산수리업등

2. ~ 4. (현행과 같음)

⑤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
-----.
----- 국가유산수리업등-----

-----.

1. ~ 3. (현행과 같음)

⑥ -----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국가유산수리업에 -----

----- 국가유산수리업의 영위기간 -----
----- 국가유산수리공사금액 -----
-----.

1. ----- 국가유산수

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⑦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들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리업을 법인사업-----
-----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는 --

2. 국가유산수리업과 국가유산수리업-----
-- 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수리업 전부-----

⑦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

-----.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 국가유산수리업자등-----

-----.

② ----- 국가유산수리업등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
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 3. (생략)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
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
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5. (생략)

③ (생략)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
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
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 사실
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
서를 포함한다)를 상속개시일부
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국가유산수
리업등-----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신고 등) ①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

-----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

-----.

② ----- 국가유산수리
업등 -----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생략)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생략)
-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문화재수리도급대장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도급대장을, 문화재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도급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

-----.

1. (현행과 같음)
2. -----
----- 국가유산수리업등-----

3. (현행과 같음)
- ③ 국가유산수리업등-----

-----.

제14조(도급 대장) -----
----- 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수리도급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 국가유산감리업자-----

-----.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국가유산수리-----

· 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생 략)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생 략)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
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

1. 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나. (생 략)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
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문
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대금부
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
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
급인에게는 문화재수리 대
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
을 지급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3. (현행과 같음)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국
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 -

-----.

2. -----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문화
재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
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
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
정하도록 할 것

나. (생략)

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
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
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
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
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는 기성(既成) 부분과 하수
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
의 금액을 확정된 후 하수
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다. (생략)

가. ----- 국가유
산수리의 -----
----- 국가유산수
리한 -----

나. (현행과 같음)

3. -----

가. -----

----- 국가유산수리한 -----

나.·다. (현행과 같음)

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완료 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③ · ④ (생략)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문화재수리업자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의3

라. -----

국가유산수리-----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
-----,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

-----.

② -----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설계승인을 한

----- 국가유산수리종합 정보시스템-----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제17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

---- 국가유산수리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의3(문화재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이하 “설계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문헌·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것
 2.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을 것
 3.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것
 4. ~ 6. (생략)
 7.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기술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설계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4(문화재수리 착수·완

----- 국
가유산수리 -----
-----.

제17조의3(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① -----

-----.

1. --- 국가유산-----

 2. --- 국가유산-----

 3. 국가유산-----

 4. ~ 6. (현행과 같음)
 7. -----
-- 국가유산-----

- ②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 종류별-----
-----.

제17조의4(국가유산수리 착수·

료의 보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5(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승인)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한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문화재청장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첨부서류

완료의 보고) -----

----- 국가
유산수리를 -----

-- 국가유산수리 착수-----

---.

제17조의5(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 ① -----
----- 국가유산
수리 계획-----

---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수리 -----

--.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
-- 국가유산수리-----

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
3.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 착수(완료) 보고서
4.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5.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

② (생략)

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①
~ ④ (생략)

⑤ 발주자는 새로 설치한 부재
의 표시를 문화재수리 도급계약
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제17조의9(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
재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
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
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
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

1. ----- 국가
유산수리 -----
2. ----- 국가
유산수리 -----
3. ----- 국가
유산수리 -----
4. ----- 국가
유산수리 -----
5. ----- 국가
유산수리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국가유산수리 -----

-----.

제17조의9(책임감리를 하는 국가
유산감리원의 요건) -----

-- 국가유산감리원-----
-----.

1. -----
가.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국가유
산수리기술자 -----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

----- 국가유산
수리등-----

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등----

2. -----

가.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국가
유산수리기술자 -----

----- 국가유

산수리등-----

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등----

3. -----

가. -----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국가유산수리

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
람

- 2)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
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
당하는 경우

- 1)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
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
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
람

- 2)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
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

기술자 -----
----- 국가유산수
리등-----
-

-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국
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등-----

나. -----

-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
----- 국가유산수
리등-----
-

-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 국
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등-----

제18조(감리보고서) ① -----
----- 국가유산감리업자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
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
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
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
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
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및 감리의 개요
- 1의2.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2. (생략)
3. 주요 공정별 문화재수리 현
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
재수리기술자등의 명단을 포
함한다)
4. ~ 6. (생략)
7.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
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9.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10. (생략)

②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문화
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
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

----- 국가유
산수리-----

1. 국가유산수리 -----
- 1의2. 국가유산감리원-----
2. (현행과 같음)
3. ----- 국가유산수리 현
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
가유산수리기술자등-----

4. ~ 6. (현행과 같음)
7. 국가유산수리 -----
8. 국가유산-----

9. 국가유산수리 -----
10. (현행과 같음)

② ----- 국가
유산감리업자-----

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2. (생략)

3.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 ~ 7. (생략)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9.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 · 11. (생략)

③ (생략)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의3

-----.

1. 국가유산수리 -----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산수리 -----
--

4. ~ 7. (현행과 같음)

8. 국가유산-----

9.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10. · 1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국가유산감리업자-----

-----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

----- 국가유산감리원으로 -----

-----.

② -----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의2(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종합 정보시스템-----

---. -----

----- 국가유산감리원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제21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제2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 국

가유산수리업자등-----

-----.

제22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

-----.

1. ~ 4. (생략)

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요청하면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생략)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 수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①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국가유산수리의 평가) ①
----- 국가유산수
리의 -----

----- 국가유산수리가 -----

② ----- 국가유
산수리-----

③ _____

의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④ 문화재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 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

----- 국가유산수리 평가표 -

----- 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

④ 국가유산수리가 -----

----- 국가유산수리 전체-----

-----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분담하는 국가유산수리별-----.

⑤ ----- 국가유산수리-----

제27조(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① -----

----- 국가유산수리업자-----

---. -----

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2. (생략)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생략)

②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0호 서식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

----- 국가유산수리업자 -----
-----.

1. 2. (현행과 같음)

3. -----
--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
----- 국가유산수리의 평가평점 -----

4.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
-----.

③ -----
----- 국가유산수리업자 -----
-----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 -----

-----.

제28조(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

-----.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1. ~ 4.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

③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지정 -----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 국가유산감리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5. (생략) ②·③ (생략)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2) 481 - 3191